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2002. 12

魯 英 勳

## 서 언

자본이득과 이에 대한 과세는 많은 나라들에서 논란이 많은 조세 정책 분야이다. 자본이득세를 일찍이 도입한 나라들은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세무행정적 복잡성 차원에서 수많은 논의와 개정을 거듭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5년 종합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로 확대 개편한 이래 거의 매년 세법개정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등문제로 여러 차례 발표된 주택시장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에도 빠짐없이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누진세율을 갖는 개인소득세제하에서 다른 통상적인 소득과 함께 합산과세하는 유형, 별도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유형, 자본이득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는 유형 등 국가군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소득과세, 소비과세, 그리고 재산과세 간의 관계 내에서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본 후, 소득세 체계 내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처리문제를 통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는 논거들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규정을 포함하여 동일 세법 내에서 분류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데, 그 정책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세율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자본이득이란 한 나라 전체로 보아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부각되는 문제이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실물자본스톡의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경제주체들이

저축을 통해 축적한 가계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자산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 및 소득의 집중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득과세가 관심을 끌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군별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법체계의 영향, 국제자본시장 내에서의 주변성, 부에 대한 과세정책, 자산시장 발전 정도에 따른 요인, 글로벌 자본주의하에서의 자본의 이동성 등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한 후 자료가 이용가능한 35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의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단순히 현재의 틀 내에서 교정하려는 노력은 큰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다. 국내적인 시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동산 중심 과세대상 편협성 문제, 양도소득세 산의 기준시가 적용원칙에 따른 실질과세 위배성 문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점 등은 세제 및 세정담당자들에게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정상적인 인세로서의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조세체계 내에서 자본이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향 설정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저자는 원내 세미나에서 좋은 지적을 해 준 원윤희 교수와 김정훈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많은 나라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송은주 주임연구원, 안상숙 연구조원, 그리고 출판담당자에게도 감사를 표하

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I. 연구배경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정 국가의 특정 자산시장에서의 가격급등이 자원배분, 분배, 그리고 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산의 단기적 가격급등에 따른 투기적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기존 조세체계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면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점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는 추세하에서는, 한 국가의 자본 및 자산에 대한 과세 특이성(singularity)이 조세아비트라지(tax arbitrage)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간 자산구성(portfolio) 변경 투자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변경하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의 과세현황 및 시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결합하여 개인소득세, 부유세, 상속증여세와 같이 상호관련된 조세체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별 자본이득세 부과현황과 결정요인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인 통상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구분, 이에 따른 차등과세의 근거, 차등과세의 방법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적 관계를 세율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여 세부담을 비교한다. 또한 자본이득과세 여부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

로서 국가별 법체계의 차이, 경제발전 수준, 자산시장 발전 정도, 법치 등으로 구성된 실증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자본이득과세제도를 형성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 구조의 개편방향을 고찰해 본다.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어느 나라나 소득·소비·자산이라는 넓은 의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게 된다. 소득세가 ‘잠재적 소비능력’ 또는 ‘실제소비 및 부의 순증가’에 대한 과세를 이상으로 한다면, 소득세는 소비세와 부의 순증가인 자본이득세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는 소득세체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포괄적 소득세제, 분류(리) 소득세제, 또는 혼합형이라는 접근방법 차이를 낳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어떤 과세체계를 선택하는지는 소득의 종류별로 성격(characteristics)·원천(source)·발생시점(timing)이 상이함을 강조하는 정도가 반영된 민법체계, 회계기준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무행정적인 고려요인들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던 나라들이 개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자본이득을 특별규정으로 과세처리하는 접근방법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예,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인 통상소득과 비교하여 우대 또는 중과하는 경우가 종합소득과세방식 또는 분리소득과세방식을 통해 실현 가능한데, 자본이득에 대한 이러한 우대과세조치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성격의 차이, 결집효과, 인플레이션 및 위험에 대한 배려,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감안 등의

우대과세 근거는 설득력이 낮았고, 유일하게 동결효과 완화를 위한 우대과세 근거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라는 접근방법을 택한 조세정책적 의의를 살펴본 결과, 명목적으로는 중과의 취지를 갖고 도입되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경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 Ⅲ.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해당국의 법체계,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중심성, 부에 대한 그 나라의 태도, 그리고 자산시장의 발전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법은 민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 성립 이후 각국의 민법은 계약, 재산, 불법행위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조세가 부과되는 민간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법적인 측면에서 거의 이들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과 세법 간의 일반적 관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들, 그리고 회사법이나 상법 등 기업형태에 따른 과세 측면에서 그 나라의 민법체계 및 법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영미식 보통법과 대륙식 민법체계 간 법전통의 차이는 법조문의 구체성 정도, 재산권에 대한 상대적 보호 정도, 법인격의 부여대상 등에서 차이를 보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세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1990년대 들어 국제적 자본시장의 통합추세에 따라 자본 중심국과 주변국 간에는 국제적 자본이동을 둘러싸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추기 위한 조세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북구국가들 중심으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일치하는 최저 비례세율을 적용하면서 그 외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는 이원적 소득세제(DIT)가 도입되었다. 또한 네덜란드도 이와 유사하게 2001년부터 ① 근로 및 주택소유소득, ② 사업지분소득, ③ 저축 및 투자소득의 3가지 과세유형(box)으로 구분하여 각각 4단계 누진(2.85~52%)세율, 25% 비례세율, 30%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등 북구국가들과 유사한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혁 추세에서 자본이득은 자본소득과 같은 범주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부분적 분류과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유세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자본소득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자본이득으로 실현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에서 출발하였다.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할 경우 미실현 발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 자체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순부유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일정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평가한 부의 저량에 대해 정기적·반복적으로 저율 과세하는 순부유세적 접근방법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 불특정기간중에 누적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실현시점이 속한 연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 접근방법의 일종의 근사치(approximation)일 수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자산평가의 균일성문제 때문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감소추세에 있다.

넷째, 어느 나라의 자본에 대한 과세문제는 경제성장 단계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발전패턴 등에 따라 각 시대단계별로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게 된다. 정책당국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실

물자본량(capital stock) 자체의 증가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지 만 국내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의 부 및 소득의 집중 완화를 위한 자본과세에 정책당 국이 관심을 두게 된다. 노동소득보다도 자본소득의 계층간 격차 에 의한 추가적인 부의 불균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경제성장의 결과 축적된 자산 및 부의 규모가 상당수준에 달하게 되면서 국내 및 국제자본시장이 통합화되어 가는 단계에 서는 조세아비트라지(tax arbitrage)를 노리는 금융상품들이 개 발되는 단계를 들 수 있다. 결국 조세당국은 그 나라의 국부 또 는 자산 총액, 그리고 그 구성 내역에 대한 가치판단을 반영하여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과세가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자본이득과세 여부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실 증모형으로 설정하여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Probit 분석의 주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본 이득과세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이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이후 에야 자산이 축적되고 이에 따라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선형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주식거래량이 많을수록 즉,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자 본이득과세제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 IV. 정책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향은 자본소득 및 자본이 득을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상속·증여세와 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소득세와의 구조적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은 포 함하면서 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 누진적 개인소득과세가 양

자에 대한 차등과세 효과 때문에 조세회피 및 조세아비트리지 행태를 유발하여 세무행정당국이 큰 애로를 겪었다는 외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급적 비차별적으로 과세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분류과세하는 접근방법을 택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의 구조 특히 세율체계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처리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대외 개방도가 제고될수록 자본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우대되는 자산의 자본이득으로 전환하는 조세회피활동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인 자본이득세로 재편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체계와 구조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	17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	22
1. 세수통계 목적의 조세구분 .....	22
2. 소득·소비·재산 과세간의 관계 .....	23
3. 소득세체계와 자본이득 .....	25
4. 차등과세의 이론적 논거와 기능 .....	31
가. 통상소득과 자본이득의 개념적 차이 .....	32
나. 결집효과 .....	34
다. 인플레이, 위험요소, 저축 및 투자 증진 .....	35
라. 동결효과의 완화 .....	36
마. 소결론 .....	43
5.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구조 .....	45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	55
1. 법체계의 영향: 보통법 대 민법 .....	55
2. 북구 등 국제적 자본주변국: 노르딕 및 네덜란드(2001) .....	61
3. 부유세 부과국가군 .....	63
가. 부유세의 개념과 의의 .....	63
나. 부유세 과세의 목적 .....	65
다. 순부유세 과세국가 현황 .....	66
라. 각국의 시행 경험과 경제적 효과 .....	76
4. 자본이득과세에서 자본시장 발전의 함의 .....	79

5. 실증분석 : 자본이득과세의 결정요인 .....	83
IV. 결론 · 정책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	90
1. 개인소득세, 부유세, 상속 ·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관계 .....	90
2. 종합소득세 체계내에서의 자본이득과세 .....	94
참고문헌 .....	98
부록: 각국의 자본이득세제 .....	102
부록 I: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 .....	126
부록 II: 법전통의 역사적 발전 .....	130

## 표 목 차

<표 II-1> OECD국의 개인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변화 (1986년 → 2001년) .....	30
<표 II-2>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변화 추이 (1989년~현재) .....	51
<표 II-3>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간 상대적 세부담 비교 (1996~1998년) .....	52
<표 II-4>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간 상대적 세부담 비교 (1999~2001년) .....	53
<표 II-5>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간 상대적 세부담 비교 (2002년 이후) .....	54
<표 III-1> 소득세법 현황 .....	59
<표 III-2> 순부유세 도입 및 운영국가 현황(2001년 현재) .....	69
<표 III-3> 각국의 부유세제도: 누진세율 국가(2001) .....	70
<표 III-4> 각국의 부유세제도: 법인과세형(1998, 2001) .....	72
<표 III-5> 각국의 부유세제도: 노르딕국가(2001, 1997) .....	74
<표 III-6> 각국의 부유세제도: 기타(1997) .....	75
<표 III-7> 순부유세의 세수비중 .....	77
<표 III-8> 자본이득과세 여부 및 설명변수 .....	88
<표 III-9> 자본이득과세국 Probit 분석 결과 .....	89

<부표 1> 보유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정부공채의 경우(2000) …	114
<부표 2> 보유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직접주식취득의 경우 (2000) .....	116
<부표 3> 보유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연금소득의 경우(2000) …	119
<부표 4> 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자가점유주택의 경우(2000) …	121

## I. 서 론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특정 자산시장에서의 단기간 가격급등현상에서 촉발되어 자원배분, 분배, 그리고 경제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경제정책 당국이 우려하는 단편적인 계기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특히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위험감수(risk-taking)에 미치는 자본이득세의 영향력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한 성장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국가 간 경쟁에서 뚜렷히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 간 이동성이 점증함에 따라 자본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및 자원배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이득세를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부터도 발생한다. 한 국가에서의 특이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유지는 전세계적 단위의 조세아비트라지(tax arbitrage)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 간 포트폴리오 투자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시에 다른 나라들의 과세 현황 및 시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과세 만큼 논란이 많고 자주 변화된 역사를 가진 조세분야는 거의 없을 것이다<sup>1)</sup>. 이는 외국에서의

---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 변천사는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 제9장의 부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1983년 도입 이후 20년간의 세제 및 세정변화 내용은 다른 어떤 조세보다도 분량이 많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화가 주로 이동성이 강한 주식 등 금융자산에 관련된 개편이었던 것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에서의 주기적 가격 급등락문제와 이에 따른 부 및 소득의 불균등 분포 심화문제에 대한 대응현상이었다. 특정 부동산시장의 호·불황 상황에 따라 경기안정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잦은 개편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이후 가계 등 경제주체의 자산구성 분포에 있어서 부동산 편중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주식 등 금융자산 편입비율이 증대됨에 따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라는 정책과제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관련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를 다룬 전영준·이철인·한도숙(1998)과 곽태원(2000)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포괄적 소득과세형 소득세제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종합연구 중 일부분으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후자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실천하는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연구는 국가(군)별로 현재의 체계로 발전하게 된 원인들인 해당국들의 기존 세법체계, 조세정책적 목표, 금융 등 자산시장 발전패턴, 회계기준(관행)<sup>2)</sup>들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에 대한 과세(capital taxation, taxation on capital)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생산요소로서의 자본(capital), 그리고 저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매체(medium)이자 결과물인 자본자산(capital asset)을 모두 광의의 자본이라고 한다면, 이들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모두 자본과세라고 통칭할

2) 자본이득과세의 경우 그 개념 정의 및 과세방식에 있어서, 세제 및 세정담당 공무원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회계사 및 세무대리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성공의 가능성이 적음. 특히 독립적인 세무회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회계제도 및 실무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 중 취득 후 보유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그리고 매도 또는 교환 등 유상으로 처분(disposal, alienation)될 때 실현되는 자본의 가치상승분을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라고 칭하기로 하자<sup>3)</sup>.

본고에서는 가계라는 경제주체의 저축활동 수단이자 결과물인 여러 유형의 자산들에 대한 과세제도 중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정책을 비교·분석한다. 따라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소유한 실물자본이나 사업용자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 중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그 외의 사업용자산에서는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로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실물(real) 자본( $K$ )이나 투자 ( $K$ )와 관련된 과세정책보다는 자산시장(capital asset market) 내에서의 자산가액변화 ( $\dot{q}K$ )에 대한 과세정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떤 특정 국가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려는 경우 전세계를 통털어서 ‘가장 이상적인 원형(prototype)’ 또는 ‘최고의 자본이득과세모형(best practice)’이라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시행 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전체 조세체계 및 자본과세구조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며,

---

3)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양도에 대한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에서는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과세대상자산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상의 ‘양도소득’이란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자본이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유형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인소득세와의 관계, 부유세가 자본이득세에서 갖는 의미, 민법 전통에 따른 세법의 차이 등의 요인에 주된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비교의 분석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가 갖는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양도소득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급등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이슈에 대해서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님을 처음부터 밝힌다.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문제나 양도소득세 산정시의 기준시가적용원칙과 관련된 실질과세 위배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기는 하나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자본이득과세 및 개인소득세가 상호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국가별 자본이득세 부과 현황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된 주제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방법론으로는 국가간 자본과세 및 자본이득과세와 관련된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國家群별로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을 하는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의 OECD 및 IMF자료를 기초로 해당국 방문 및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정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법경제학 분야, 특히 법금융 분야에서 국가별 금융구조 차이를 법제, 회계기준, 투명성 등 질적변수로 설명하려는 최근 실증분석 연구를 택하였다.

제II장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소득세체계와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본이득이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다르다는 본질적 차이와 이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체계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거나 세부담을 낮게 유지하는 주장들의 논거로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자본이득세와

개인소득세 간 구조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과세우대를 하는 것인지 중과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자본이득세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국가별 세법 전통, 국제자본시장 내에서의 위치, 부유세 부과 여부,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는 자본이득세의 부과 여부를 이상에서 기술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계량모형을 설정한 후 30여개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Ⅳ장 결론에서는 앞 장에서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자본이득세의 국제 간 비교연구에 대한 추가연구 또는 유사한 국제비교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부록에서 비교세법학 및 비교세무행정학에 도움이 되는 자료출처를 제공한다.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 1. 세수통계 목적의 조세구분

자본이득과세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대한 과세라는 의미에서, 순자산세(net wealth tax, net worth tax), (세대간) 자본이전세(capital transfer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OECD 조세분류체계에 따르면, 자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1000단위의 소득과세 대분류에 속한다. 이 중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1100단위 중분류 중 1120 세분류 항목에, 그리고 법인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1200단위 중분류 중 1220 세분류 항목에 귀속된다. 자본이득에 대한 징수세액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세액이 기록됨으로써, 1000단위의 타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징수액과 구분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국가별 자본이득세 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외에 재산 및 부에 대한 과세는 대부분 4000단위 대분류항목에 속한다. 이 중 순자산세(net worth tax)와 순부유세(net wealth tax)는 순자산(순부=총자산-총부채)에 대해 법인과 개인에 대해 각각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富라는 저장가액(stock value)에 대해 부과되는 인세(personal tax)이다(OECD classification: 4200). 그 외에 자본이전세는 주로 자본의 세대간 이전시에 부과되는 상속세(유산세) 및 증여세를 칭하며(OECD classification: 4300), 타인과의 유상거래단계(capital transaction)에서 부과되는 인지세(stamp duty)나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유통세/거래세(turnover tax, OECD classification: 4400)와는 구별된다.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23

4000단위 이하의 중분류 및 세분류를 하는 기준은, ① 부과시기의 정기성 여부, ② 부과대상(personal wealth or impersonal real property), ③ 거래(transfer)관계의 유형(유상, 무상, 세대 및 혈연 간 등), ④ 과세대상자산의 유형(부동산, 금융자산), ⑤ 납세의무자 유형(개인이나 가구, 법인 등)에 따른 것이다.

결국, 국제간 조세체계 비교시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광범위한 소득과세인 1000단위 대분류 내에서 1120(개인)과 1220(법인)의 소분류단위로 소속되어 소득세체계 내에서 자본소득(capital income)과는 구분되어 비교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을 1000단위인 소득세 내에 포함시켜 세수통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자본이득세가 개인소득세(PIT)나 법인소득세(CIT) 내에서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술하는 자본이득세의 구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별도의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던 나라들이 영국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이 있었으나, 점차 개인소득세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수통계상으로는 1120 및 1220항목에 자본이득에 대한 세수금액이 보고되지 않는 데, 이는 많은 국가들이 개인소득세의 세수 중 자본이득과 관련된 세수만을 분리하여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2. 소득·소비·재산과세간의 관계

먼저 소득, 소비, 그리고 재산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재정학자들은 헤이그-사이몬스(Haig-Simons: H-S)정의라고 부르는 그들 나름대로의 '소득'에 대한 기준을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한 개인의 소비능력을 純증가시킨 화폐가치(the money value of the net increase to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during a period.)'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H-S 소득

정의가 결국 실제소비가 일어나건 아니건 또 어떤 형태로 소비가 발생하건 상관없이 모든 원천의 잠재적 소비증가행위를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에 잠재적 소비능력(potential consumption)을 증가시킨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소득 개념은 희스의 미시경제학 원론이라 할 수 있는 *Value and Capital* 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sup>4)</sup>.

그리고, 이러한 정태적 소득 개념은 사후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소비액(the amount actually consumed)에 부의 순증액(net additions to wealth)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후자는(능동적) 저축(saving)과 기초 및 기말 사이의 보유자산의 평가가치 변동액을 더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H-S 소득기준은 한 개인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것도, 예를 들어 소득을 얻기 위해 부담한 비용을 소득을 결정할 때 차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H-S적 포괄적 소득개념은 실제 소비 또는 잠재적 소비능력, 따라서 재산가치 변동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포괄적 소득 개념에 기초한 소득과세는 소비과세 또는 재산과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소득세는 ‘잠재적 소비변화’를 과세베이스로 하지만 소비세(consumption tax)는 실제 소비용으로 판매된 상품의 양이나 가치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고, 부유세(wealth tax) 등 일정시점에서의 부에 대한 저량(stock)과세는 잠재적 소비능력 과 실제소비 간의 차액의 누적치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다.

$Y$ 는 소득,  $C$ 는 소비, 그리고  $\Delta W$ 는 순자산 변동(즉, 저축)의 회계적 항등식으로부터,  $Y=C+\Delta W$ 라는 소득정의에 따른 항등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중  $C$ 나  $\Delta W$ 는 선형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i$

---

4) ‘the maximum value which he can consume during a week, and still expect to be as well off at the end of the week as he was at the beginning.’ p.172

기말 또는  $i+1$  기초의 부는  $W_{i+1} = E_i + (1+r)W_i - C_i$  로서, 이를 정리하면  $C_i + \Delta W_i = E_i + rW_i$  으로 표현되는데, 좌변은 H-S 적 소득이며 우변은 임금이나 이진지출과 같은 비자산적 수입(non-wealth receipt)과  $i$ 시점까지 축적된 부에 대한 자산소득(capital income)의 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포괄적 소득과세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소비능력(potential consumption)의 변화를 과세베이스로 포함해야 하므로, 자본이득은 타원천의 소득유형과 함께 과세베이스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세부담을 지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비과세형 조세체계<sup>5)</sup>하에서는 자본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소비될 때에만 과세베이스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기존 소득세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산의 가치변화를 측정하는 애로점에 기인한 소득과세형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된다고 주장된다.

### 3. 소득세체계와 자본이득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체계는 종합과세 유형(global approach, comprehensive base taxation)과 분리(분류)과세 유형(schedular approach)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이론구조모형 중에서 종합과세형은 소득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세 구조이다. 미국의 연방 내국세법(Internal

5) 광범위한 의미의 소비세에는 물세(in-rem)인 매상세(retail sales tax)와 부가가치세(VAT), 그리고 인세(personal tax)인 Hall & Rabushka 정률세(H&R flat tax)와 cash-flow tax 등이 모두 포함됨. 이 중 cash flow tax는 학자들에 따라 개인소비만을 반영한 소득을 cash flow basis에서 과세하자는 cash flow personal income tax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Andrews(1973), Bradford(1980)

Revenue Code)은 제61조(a)에서 ‘총소득은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고 규정하여 가장 전형적인 포괄주의 소득과세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6)</sup>. 순수한 포괄주의 과세기준하에서는 소득유형(category of income, income classification)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의 유형별로 소득 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을 서로 대응(match)시킬 필요없이 모든 소득과 비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순소득을 도출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헤이그-사이몬 소득 개념에 충실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하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① 실제소비의 시장가치 ② 잠재적으로 소비가능한 자산 순증을 모두 과세베이스로 삼는 당위론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측면에서는 통상소득의 일부분인 자본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종합과세형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유형별 과세금액(taxable amounts)을 확인·정의하기 위해 일종의 소득구분 구조(schedular structure)를 갖고 있는 경우를 현실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예로써,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sup>7)</sup>.

6)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라고 규정한 후, 내국세법(IRC Title 26)에서 소득으로 분류되는 임금, 임대료, 배당 등의 예를 들었을 뿐 특정 항목이 소득과세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7)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소득을 정의할 때 보통 두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음. 첫째, 어떤 항목이 어떤 유형의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게 되어 비과세되는 것임. 일부 나라들은 기타소득이라는 잔존(residual) 유형의 소득으로 정의하기도 하지 만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둘째, 각 소득유형들은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의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종합 소득과세체계하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함. 심지어 유형별로 소득을 정의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사법부의 법해석 원칙 때문에 소득을 상이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27

분리과세형 접근방법은 소득의 종류 및 원천별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에 기초하여 차별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자본이득과 그 이외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 간에 여러 가지 기준에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앵글로색슨계 조세체계에서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본재산(capital asset)으로부터 매매업자(dealer)로서 하는 사업행위가 아니라, 비정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소득 흐름에 비해 가볍게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그 배경에는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대 영업소득(income from business or trade)<sup>8)</sup> 등 소득유형간 회계적 차이를 인정하여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의 실현주체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보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앵글로색슨계 법체계 전통은, 신탁(trust)의 개념상 원본(corpus)에 배분·귀속되는 이득(gain)과 원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income)을 구분하여 회계·관리하는 전통이 강하여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1965년부터 1987년까지 22년간 운영된 30% 단일비례세율의 영국 자본이득세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전통 및 회계기준에 영향을 받은 분리 및 차등과

---

한 유형별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게다가 소득에 대한 기본정의틀 어떻게 내리던 간에, 입법과정중에 조세정책적 그리고 과세기술적 이유로 인해 소득에 대한 구분이 내려짐. 예를 들어, 자본이득이 과세베이스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소득들과는 다르게 과세대우를 받는 경우임. 또한, 상이한 유형의 소득들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유형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개의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 경우임.

- 8) 미국에서는 자산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와 소득유형을 각각 투자자(investor) 대 매매업자(trader), '자본적 재산(capital asset)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 대 '재고자산(inventory)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함.

세는 자본소득을 자본이득 형태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겠다는 왜곡현상이 자산시장 내에 만연하게 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세제개혁 추세에서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분리 또는 분류과세형(schedular approach)은 각 소득유형별로 총소득과 공제비용들이 구분되어 결정되므로 어떤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각 소득유형별로 해당세율들이 과세소득금액에 적용되는데, 세율들은 유형별로 다를 수도 있다. 또한,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세무행정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바, 각 소득유형별로 신고·결정·징수절차가 다를 수 있어서, 어떤 유형의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되고 다른 유형의 소득은 (신고)납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본이득의 경우 원본자산으로부터의 소득흐름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득발생 시기적(timing) 차이, 그리고 자본이득이 대상 자산의 소유로부터 수동적으로 발생하면 불로소득적이라는 소득원천(source) 및 소득성격(character) 측면에서의 차이가 제기된다. 특히 화폐가치로 표현되는 소득, 특히 금융자산(financial product)과 이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에는, ① 소득의 성격(character) ② 금액(amount) ③ 발생시기(timing), 그리고 ④ 원천(source)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세계에 있어서는 순수한 분류과세와 순수한 종합과세 간에 매우 다양한 중간 형태인 ‘혼합형(composite system)’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의 종합과세시스템에 몇 개의 분류소득과세들을 합쳐 놓은 것이다. 몇 가지 분류과세 소득유형들에 대해서는 먼저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유형들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극도로 세분화된 분류소득과세제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소득을 유형(categorization)과 원천(source)로 나누더라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29

도 유형별 소득합계를 종합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분류소득과세적 요소를 내포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북구의 이원적 소득과세 및 네덜란드 소득세제에서 나타나는 형태처럼, 근로 및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 사업소득(business and professional income), 투자 및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대분류하여 첫째 유형에 대해서만 누진과세를 하며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의 조화, 셋째 유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세의무 종결의 새로운 패턴이 확산되는 추세이다<sup>9)</sup>.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차등화의 기본정신은 앵글로색슨계나 대륙법국가들의 과세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중 1년이라는 단위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면서도 해당소득의 발생 및 실현 상황을 감안하여 분류과세하고 있는 분리소득으로는 산림·퇴직·양도소득이 있다. 이 중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율체계하에서의 연분연승법에 의해, 5년 이상 조립한 임지의 경우에 국한한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체계하에서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종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분류과세의 경우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종류 간 차별성이 인식되고는 있으나, 궁극적인 세부담의 차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하고 과세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9) 네덜란드의 경우 2001년부터 'Box System'이라고 하여, i) 고용 및 주택소유소득, ii) 사업소득, iii) 저축 및 투자소득으로 대분류한 후, 각 유형 소득에 대해 32.35~52%의 누진세율, 25% 비례세율, 30%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율 29~34.5%를 감안하면 노르딕 국가군의 이원적 소득세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됨.

<표 II-0> OECD국의 개인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변화  
(1986년 → 2001년)

자본이득에 대한 별도과세 (Separate Tax on Capital Gains)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내 자본이득과세규정		
	장기자본이득을 포함한 포괄적인 적용범위	단기 또는 투기적 자본이득에만 국한	관련 규정 없음
덴마크	>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 포르투갈	독일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터키	
스위스(취리히) <sup>1)</sup>	캐나다		
한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sup>2)</sup>		
	스웨덴		
	미국		

주: 1) 사업용이 아닌 한 자본이득은 연방단위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주 (caton)단위에서 과세될 때는 개인용이나 사업용이나, 그리고 동산이 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다르며, 주는 주소소득세와는 별도의 부동산자본 이득세를 유지하고 있음.  
2) 도시지역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득에 대해 개별과세  
자료: OECD, *Taxation of the Capital Gain in OECD Countries*, 1987.  
*Master Tax Guide*(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ropean Tax Handbook*, 2002.

## 4. 차등과세의 이론적 논거와 기능

자본이득은 실현될 때에만 과세되는 실현주의 원칙(realization principle)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발생하고 있더라도 양도 및 교환 등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속성이 결국 세금납부를 연기시켜 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 이것이 매년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 비해 세제상 과세우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납세지연효과는 투자금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수익만큼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투자자에게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과세하였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무이자 대부(interest-free loan)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자본이득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본재(capital asset)의 구성을 변화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현재의 자산구성 상태를 그대로 끌고가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동결효과(lock-in effect)라고 한다. 또 한 가지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조치로는, 많은 나라에서 자본이득은 사망시에도 과세되지 않고, 사망인의 취득가액이 상속가액으로 되어 피상속인 생존기간 동안 누린 자본이득이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면서도 과세되지 않는데 이 또한 동결효과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현주의 원칙에 기초한 과세방식, 그리고 사망시 취득가액의 조정과 같은 상속세와의 관계 때문에 기인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현상 이외에 다른 조세정책적 목적 때문에 통상소득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있다.

자본이득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이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비통상적 소득이며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는 당장의 소비를 억제하는 희생을 수반하므로 일종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자본축적 및 위험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산보

유기간 동안의 인플레이가 자본이득에 대한 유효세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정(counterbalance)해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preferential treatment of capital gains)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소득과 분리하여 동일세율 또는 저율로 과세한다거나, 종합소득과세하면서 산입비율(inclusion rate)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를 주장하는 논거가 우대하는 구체적 형태 및 방법을 지지하는 논거와 뒤섞여 제기되는 경우에도 이를 면밀히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통상소득과의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논거로서, 소득 개념의 차이 또는 결집효과문제 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자본이득에 대한 실효세부담을 낮게 하여 우대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에서는 다른 유형의 소득과 대비하여 자본이득에 대해 세제상 과세우대하여야 한다는 논거 및 정당성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가. 통상소득과 자본이득의 개념적 차이

자본이득에 대해 우대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 중 상당부분은 현행의 개인 및 법인 소득세체계 내에서 광의의 자본소득이 적절히 과세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에서 출발한다. 실현주의 원칙의 채택, 물가상승 조정 부재,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조화 부족 등과 같은 결점들은 분명 H-S적 포괄적 소득에 대한 이상적 과세로부터는 벗어난 왜곡현상들이다. 이러한 결점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자본이득에 대해 우대과세하는 것이 추가적인 왜곡을 낳을 것인지, 아니면 차상책(second-best)으로서 보다 이상적 상태

에 근접하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자본이득은 통상의 소득과 성격(nature) 또는 발생시기(timing)가 다르므로 달리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금 또는 다른 생산적 노력에 대한 대가와 전혀 달리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non-recurring)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누진소득과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에만 부과되어야 하고 특별한 이득이나 횡재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비록 어떤 사람의 보다 높은 납세능력이 횡재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기인한 경우일지라도 오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만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득세베이스가 사람들의 납세능력 차이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개념과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이득은 동일한 금액의 다른 어떤 소득과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며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이자율의 변동에 기인하여 자산가치가 변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히 이자율 변화가 반영되어 자산가치가 변화한 것은 소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채권 등 고정소득증권(fixed income security)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의 경우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자율 하락시 채권 또는 다른 고정소득자산의 가격이 상승해서 그 수익률이 새로이 낮은 이자율을 지불하는 유사 자산들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가격 상승은 소유자의 이자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의 이자율을 지불하는 어떤 채권의 가격이 시장이자율이 10%로 하락하여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그 채권을 팔아 전

10) 미국의 경우, 소득세 초창기에 상당히 인기를 누리던 이러한 ‘협회의 소득’은 연방최고법원이 Glenshaw Glass건에서 ‘punitive damage awards’를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세법학계에서 별로 지지자가 없는 형편임.

액을 10% 수익률의 새로운 채권에 투자하는 납세자는 계속해서 연간 12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가격상승, 즉 자본이득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진 것이 없게 된다. 그러나 가격 상승을 누린 투자자는 자본가치가 그대로인 투자자들보다는 경제적 입장이 보다 나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이제 100만원이 아닌 120만원의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게 되었고, 계속 투자한다면 그는 이자율 하락 전에 그러한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되었다. 100만원의 자본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시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자본가치 상승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일찍 투자해서 자본가치의 상승이라는 형태로 편익을 누린 것은 확실히 그의 잠재적 소비능력을 높였으므로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결집효과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우대를 찬성하는 자들은 종종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즉, 실현주의 원칙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수년 간에 걸쳐 발생한 자본이득을 자산의 매각연도 한 해의 자본이득으로 집중되어 신고하도록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이 매해 발생한 만큼씩 신고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한계세율보다 높게 과세되므로, 세제상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결집효과라는 것은 다단계 세율체계(graduated tax rates) 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이고, 자본이득이 발생하던 보유기간 연도보다 처분연도에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집효과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은 발생주의과세가 아닌 실현주의과세로 납부세금을 연기받았던 이익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실현주의과세로

인한 납세연기 혜택의 크기가 결집효과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상쇄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납세자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미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거나, 소득세 과표구간 폭이 상당히 넓은 경우에는 과표구간 상승(barcket creep)에 따른 적용한계세율의 인상이 없게 된다. 물론 결집효과에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실현연도에 급증하게 되는 납세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이득의 연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과세우대의 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 다. 인플레이, 위험요소, 저축 및 투자 증진

대부분의 자본이득은 주로 인플레이의 영향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H-S 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 물가상승 조정(indexation)방법인데 이것 또한 왜곡효과를 낳는 단순화방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가상승 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간단한 산입비율 조정이 채택되면서 보유기간별로 차등화되기도 한다. Diamond(1975)는 물가상승 조정은 차익이 아닌 취득원가에 적용되어야 하며, 자본이득세의 납세연기 혜택을 감안할 때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산입비율을 높여야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득세가 위험감수를 하는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특히 자본손실에 대한 공제(offset, deduction)제한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분명 자본이득과 손실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과세 처리할 경우 위험감수를 회피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자본이득에 대해 우대과세를 하자는 주장은 손실공제제한규정을 교정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저축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인하자는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가 저축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여 실제 민간저축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점들이 있다. 수익률만이 민간저축의 주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점과 우대과세를 통해 저축을 높이려는 대상 저축자들은 특정 자산취득을 위해 저축하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이득세상의 우대를 통해 민간저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는 실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증가된 민간저축이 국내투자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 라. 동결효과의 완화

자본이득을 우대과세하자는 주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동결효과(lock-in)’에 기초한 논의들이다. 동결효과란 한 투자자가 이득을 실현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실현주의 요건을 부과하고 사망시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투자자가 이득을 실현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더욱이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완전히 비과세된다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도 투자를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자산 1을 10만원의 취득원가로 사서 현재 50만원의 시장가치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율은 25%의 비례세율이라고 하자. 이 투자의 예상수익은 10% 또는 5만원이다. 만일 갑에게 기대수익률 12%의 자산 2에 대한 투자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자. 만일 갑이 자산 1을 매각한다면 1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난 후의 40만원만을 갖고 자산 2에 투자할 수 있어서, 48만원만큼의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갑은 현재의 투자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통행료(toll charge) 때문에 자산구성을

다양화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비록 연구결과들이 자본이득 실현의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자본이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한다<sup>11)</sup>.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이러한 동결현상은 자본이 가장 생산력 높은 용도로 흐르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비효율성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자산구성을 다양화하거나 팔아서 소비활동에 쓰기를 원하는 개인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효용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는 그의 현재 자산구성에서 위험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주식을 팔아 집을 구입 또는 다른 형태의 소비를 향유하고 싶을지 모른다. 이러한 투자결정 왜곡은 자본을 잘못 배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벤처사업에 자본을 사용하고 싶은 기업가에게는 그러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부담에 기인한 동결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덜 명확하다. 비록 한 개인은 그의 자산구성을 변경하여 얻는 이득이 클지 모르지만 특정한 고가의 주식을 소유한 사회 전체에게도 중요한지는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어, 거래시장내의 유가증권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주요 원천들인데 이들은 경제 전체에는 단지 한계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지 투자총액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없다. 동결효과가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벤처자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유인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만일 동결효과에 대한 반대가 벤처캐피탈로의 자산이전 애로 때문이라면, 우대조치 자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비록 동결효과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부담을 주지 않을

11)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유인에는 자본이득세 부담 이외의 이유도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고수익률의 투자로 변경하는 장점보다 자식에게 비상장주식(closely held business)를 상속시키려는 기업주의 욕심이 더 클 수 있음.

지라도,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 부담이 되고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우대조치로 높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동결효과에 대한 최적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산가치 상승 및 하락을 이론적으로 올바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에 의한 동결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믿음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만일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과세된다면 동결효과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가주의(mark-to-market system)를 채택하여 동결효과로 야기된 왜곡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생주의체계를 실행에 옮기는 비용이 너무 커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이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다. 발생주의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인 장애물은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은 아니다. 과도기에 쉽게 평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시가주의체계를 사용하고, 이 적용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혀 나갈 수 있다. 시가주의체계의 주된 장벽은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발생주의과세를 위한 각종 대응방법들<sup>12)</sup>을 제안해 왔으며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면 된다. 또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거래를 통한 평가를 허용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할 때까지 과세는 유예(연기)해 주지만 납세연기에 따른 이자부담 (또는 손실공제에 기인한 저축연기에 대한 세액공제)은 과세기간별로 부담토록 하는 조건하에 허용하는 방법이다. 비록 대

---

12) Noel B. Cunningham & Deborah H. Schenk, *Taxation Without Realization: A "Revolutionary" Approach to Ownership*, 47 Tax L. Rev. 725, pp. 740~746 및 Tomas L. Evans, *The Evolution of Federal Income Tax Accounting-A Growing Trend Towards Mark-to-Market?*, 67 Taxes 824, pp. 830~833 (1989) 참조할 것. 이들은 §263 A(f)의 이자환원관련 규칙(interest capitalization)이 시가주의 체계와 유사함을 강조하고 있음.

규모로 발생주의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동결효과문제를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인 ‘사망시 취득원가 조정(step up of basis at death)’에 대해 정공법을 택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실현주의 요건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사망시 취득가액 조정조항은 영구적으로 비과세하는 효과를 낳게 되어 이러한 발생주의과세의 부재가 동결효과와 근본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최적의 개혁적 해법은 사망시 취득가액 조정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한 대안으로 취득가액 승계방식(carry over)이 거론된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은 사망인의 취득원가를 물려받는 것으로, 현재 수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적·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대안으로 동결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새로운 왜곡을 발생시킨다. 취득가액·승계는 납세연기의 혜택을 무한정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취득가액 승계는 사망시 취득가액 조정조항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논리적으로는 제거할 수 있으나, 무한정 연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동일하게 된다. 기껏해야 납세연기로 인한 동결효과 유인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산이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해 감에 따라 자본이득이 축적되게 되어 동결효과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보다 나은 대안으로는 사망을 실현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무려 30년 이상 전에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듯이, 사망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상속세가 지속될 것을 가정하면서 가치상승분이 이중과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과세는 사망 전에 소비되지 않은 세후 부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없다.

설혹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망시 소득세 과세에 대한 대안으로 유산세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복잡성 및 행정적 부담은 주로 평가 또는 감정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것인 바, 과대선진된 경향이 있고, 현행법에 의해 야기된 거래적 복잡성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금납부를 위한 유동성(liquidity) 확보의 문제로서, 실현주의 요건을 줄이려는 어떤 개선안에서 발견되는 장애사항이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과세이연 혜택을 경제적으로 제거하는 유동성문제 제거방안들이 있다. 비록 유동성문제는 정치적 문제이지만 이론적인 단점은 아니어서 사망시점 과세는 실패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동결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안 중 마지막 대안은 자본재산의 처분시 처분대금의 채투자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이득은 처분대금이 허용가능한 대체자산에 채투자되었을 경우에 한해, 나중에 소비되기 위해 현금으로 수취될 때까지 이연된다는 것이다. 비록 과세이연 조항은 동결효과를 감소시키고 발생주의과세와 관련된 유동성문제를 제거하지만, 소득세의 경우에는 최적의 해법이 아니다. 사망시 실현간주(constructive realization at death)과 결합될 경우 과세이연 조항은 자본자산에 대해 소비세적 과세처리와 마찬가지로 되는 셈이고, 소득을 당위적인 과세베이스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부적절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론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발생주의 방식이나 사망시 자본이득과세와 같은 실용적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차선책에 의한 접근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헤이그-사이몬스의 소득 정의에 기초하여 조세체계를 설계하려 한다면 자본이득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를 결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원천에 따라 수입을 구별하는 과세베이스는 필연적으로 비

효율성 및 불공평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조세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와 같은 차선의 해결책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차선 해결책으로서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적 우대조치의 근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우대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등 동결효과를 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동결효과문제를 완화시켜 자본이득의 실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데 일반인들은 동의하지만 그 증가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동결효과가 사실상 우대조치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므로, 세율과 실현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동결효과를 해결하는 차선책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세제상 우대하는 것은 증가된 실현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본이득 우대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장의 핵심은, 헤이그-사이몬스적 소득에서 원천은 무의미하고, 자본이득 1달러는 다른 어떤 경제적 이익 1달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약간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대 주장이 실제 효율적이라면 즉, 파레토 개선이라면 추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간단한 답은 우리가 파레토 최적의 경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Sen교수는 그러한 경제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은 호사스럽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기아상태에 있는데, 기아자들의 후생은 부자의 쾌락을 침해하지 않고는 증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파레토 최적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만한 기준을 개발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파레토 효율성 기준의 약점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 사실상, 본 논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효율성 장점이 어떤 기준에서건 명백한 경우

라도 항상 형평성을 대조해 왔다.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두고 논의된 기준은 공정성(fairness)이다. 학계에서는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지만 공정성에 어떤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효율성과 상충관계가 발생할 때 어느 요인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특정 개편안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흔히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모두를 얘기한다. 수평적 형평성 요건은 보통 ‘동일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소득세의 경우,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동일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고 통상적으로 말한다.

형평성에 대한 평가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독립적 중요성을 갖는 규범으로서 수평적 형평성 개념이 도전받게 된 최근의 논쟁에 대해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은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세계개혁안에 따른 분포 변화를 측정하는 일련의 지수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루이스 카플라우교수(Louis Kaplow)는 수평적 형평성은 그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부각하려고 노력해 왔다. 경제학자들이 개발해낸 다양한 수평적 지수들에 대한 불만이 한 가지 요인이다. 그는 이러한 지수들이 불평등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혁 전 소득분포의 불연속성은 수평적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불만을 표명한다. 카플라우교수는 “수평적 형평성을 규정짓는 핵심적 특징은 소득분포에서 개인들이 집중되는 것이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지수들이 현상 유지를 단순히 지지하기보다는 동등성을 제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카플라우교수는 수평적 형평성을 조세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어떠한 규범적 기초도 없다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소득분배에 왜 규범적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반대론을 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두 제안들이 제기한 이슈를 요약정리하고 있다. 즉, “문제는 효율성이나 분배적 관심에서 유발된,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조세개혁들을 개혁적 소득분포에 미치는 어쩔 수 없는 영향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지 아닌지이다.” 예를 들어, 5만달러를 임금으로 번 근로자(A)와 5만달러를 자본이득으로 번 자본가(B)를 다르게 과세대우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법조항은 불공평하다고 비난되었다고 하자. 카플라우교수는, 세후에도 A와 B 간의 동일한 소득분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소득분포의 현상유지를 절대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희생하는 것은 지지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 마. 소결론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를 지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헤이그-사이몬스 소득세 내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법들에 대한 변형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적의 해법은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나 우대과세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가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재 형태의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제는 차선책으로서도 극히 열등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결집효과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이득이 대부분의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연기라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결집문제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화(연분연승)의 장치를 고안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것이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 조치보다는 훨씬 우수한 방법이다. 물가상승 조정(indexing)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공격받기 너무 쉽고, 인플레이에 기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잘못된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지지되기 어렵다. 비록 위험적 투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무차별적 자본이득우대는 비위험적 자산에까지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녁을 빗나가게 된다. 게다가, 소득세가 위험을 회피하도록 편익(bias)을 야기하는 한, 손실 한도를 제조정하는 것이 아닌 이득에 대한 우대조치는 그러한 편익을 제거할 수 없다.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우대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 설정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비과세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현 방식은 지지될 수 없다.

이들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결합시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는 지지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물론 인플레이와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집 및 위험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들 효과가 결합될 경우 실현주의에 기초한 소득세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는 이러한 문제점들 중 어느 것도 정확히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 악화시킬 수 있다.

동결효과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지만, 보다 나은 대안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 세법상의 사망시 취득가액 상향조정 조문을 폐지하고 사망시에 과세하는 것은 우대 과세조치보다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고 덜 복잡하다. 그러나, 자본이득우대조치가 차선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동결효과라는 맥락에서이다. 만일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제가 그 자체로서

대가를 치른다면, 특히 몇몇 가지 복잡성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면, 효율성을 증진시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러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우대세제가 동일한 소득자에게 동일한 세부담이 부과되지 않아서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대조치가 동일한 소득을 가진 두 소득자 간에 실효세율 격차를 감소시킨다면 일종의 개혁조치로서 우대조치는 불공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우대조치가 충분히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본소유자들의 실효세율을 증가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사실상 제고했다면 차상책으로서 인정할만한 것이다.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가 차상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두 가지 사안에 달려있다. 첫째, 우대조치는 통상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를 유도할 만큼 실현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증진시킨 것이 사실인 경우에만 인정할만 하다는 것이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증적인 증거는 불명확한 상태이고 보다 확실할 때까지는 잘못된 증거에 기초한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대조치는 단지 차상책일 뿐이며, 열등한 해법에 대해 너무 지지하다 보면 최적 해법을 구하려는 노력을 등한히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조치를 받아들이려는 용인도는, 미의회가 내국세법 사망시 취득가액 조정조항을 폐지하거나 발생주의 조세(accretion tax)를 채택할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 5.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구조

자본이득 및 손실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고 복잡성을 가중시킨 특성들을 대부분 갖고 있었다<sup>3)</sup>. 또한, 이상적인 소득세체계 내에서 포괄주의로

과세하건, 별도의 자본이득세로 분류과세(schedular taxation)하건,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을 배당 및 이자와 같은 자본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통상소득에 비해 우대할 것인지 중과할 것인지의 정책의지가 확실히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 및 법학자들은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Capital Gains Preference treatment)가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일정기준에서 정당화되고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논의들을 거듭해 왔다<sup>14)</sup>. 기존의 소득세제가 자본이득을 불완전하게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상책으로서도 현재의 과세방식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결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는 접근방법을 택한 조세정책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먼저, 타원천의 통상소득에 대한 과세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우대과세(preferential tax treatment)’를 목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중과세를 의도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동일한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 현행 양도소득세와 같이 분리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와 다른 통상소득과 통합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할 때의 세부담 차이는 2001년 이전인 <표 II-3> 및 <표 II-4> 와 2002년 이후인 <표 II-5>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sup>15)</sup>.

13) Wetzler(1977)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자본이득세가 복잡성 측면에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서, ‘보통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과수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특급포도주를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을 경감해 주며, 저축을 통해 축적한 자산보다도 상속재산에 대해 우대를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매우 이상한 자본이득세제라고 평하고 있음. p. 115

14) Cunningham and Schenk(1993), Graetz and Schenk(1995) 등

15)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부담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과표산정방식의 차이도 반영하여야 하겠지만, 본 비교에서는 주로 법정 명목세율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음.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47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단순양도한 연간 양도소득의 합계를 1996~98년 기간의 경우 30~50%('99~'01년: 20~40%, '02년 이후: 9~36%)의 3단계 누진세율체계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세부담은 최저한계세율 30%에서 시작하여 연간 누적양도익의 크기에 따라 50%에 접근한다. 반면,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할 경우의 세부담은 기타 종합소득액과 연간 양도소득의 합산액 크기에 따라 10%에서 출발하여 40%에 접근한다. <표 II-3>의 첫번째 열은 납세의무자가 실현한 양도차익의 연간누적액을 1천만원에서 시작하여 무한대( $\infty$ )까지 있는 경우로 가상하여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표 상단의 둘째 행에 있는 0에서부터  $\infty$  또한 양도소득 외의 통상적인 종합소득액이 0원에서 무한대까지 있는 경우를 가상하여 열거하였다.

둘째 열의 '양도소득세'라는 제목명 아래 수치들은 첫째 열의 가상적인 연간누적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라는 별도의 분리(류)과세 방식으로 과세할 때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양도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로 계산하였다.

셋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는 이러한 양도차익 실현자가 양도차익 외의 종합소득이 0에서  $\infty$ 까지 있는 경우, 즉 표 상단 둘째 행의 종합소득금액을 상정했을 때, 종합소득세체계로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할 경우에 양도소득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액을 양도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로 표시한다. 양도소득이 1년간 7천만원 실현되고 종합소득이 연간 8천만원인 내국거주인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보자. 양도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면서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1996~98년 기간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각 과표구간별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한계세율을 곱한 누적액인  $3000 \times 0.3 + (6000 - 3000) \times 0.4 + (7000 - 6000) \times 0.5 = 2600$ 만원이고 양도소득은 7000만원이므로 평균세율은 0.371이며 표상의 둘째 열에서는 37.1%로 표시된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年分

年乘과 같은 소득연간 평균화(income averaging) 조정 없이 다른 종합소득액과 단순합산하여 종합소득세체계하에서 과세된다면, 통상적인 종합소득이 8천만원이었던 내국거주인이 그 해에 마침 양도소득이 실현되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액은  $[1000 \times 0.1 + (4000 - 1000) \times 0.2 + (8000 - 4000) \times 0.3 + (15000 - 8000) \times 0.4] - [1000 \times 0.1 + (4000 - 1000) \times 0.2 + (8000 - 4000) \times 0.3] = 4700 - 1900 = 2800$ 만원이다. 이를 실현 양도소득금액인 7천만원으로 나눈 평균세율은 40%이고 11번째 열과 9번째 행이 교차하는 칸(cell)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류)하여 별도의 (상이한) 누진세율체계하에서 과세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체계에서 단순합산과세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누적양도소득이 9천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하는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평균세율이 40% 이상이 되면서 양도세 최고한계세율인 50%를 향해 접근하므로, 기타 종합소득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인 40%를 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하에서의 추가부담액보다 항상 크게 된다.

둘째, 종합소득세체계하에서의 세부담이 양도소득세 세부담보다 크기 위한 필요조건은 연간누적 매매차익이 9천만원 미만인면서 기타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종합소득세체계하에서의 세부담이 양도소득세 세부담보다 크기 위한 충분조건은 연간누적 매매차익이 9천만원 미만인면서 기타 종합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분리된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중과되는 현상은 <표 II-3>의 명암처리된(shaded area) 부분에 국한하여 나타나고,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모두 양도소득을 경과하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하에서 연간 과세소

##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49

득액이 6천만원 미만인 소득자들에게 마침 그해에 과세양도소득이 실현되었다면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됨에 따라 낮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종합소득세율체계와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비교할 때, 현행 분리과세방식하에서의 세부담은 종합과세시보다 적게 나타난다.

다른 원천소득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1996년 과세양도차익을 그대로 종합소득세율체계에 적용하면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 과표구간인 1천만원 이하에서만 세부담이 약간 낮아질 뿐 그 외의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비슷하거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식의 분리과세제도가 미등기전매나 2년 미만 중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인 사례로 타원천소득이 있고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기존 타원천소득 수준에 따라 양도차익분 합산으로 인한 적용한계세율이 달라지는데 양도차익 연분연승을 전제하지 않는 한 세부담은 종합과세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명목적으로는 중과의 취지를 갖고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3> 및 <표 II-4>와는 달리, 2002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체계와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가 과표구간의 상하한 금액 및 적용한계세율까지도 정확히 일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모든 구간에 있어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비해 경과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도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2년 이상의 장기간에 발생하였다가 실현된 소득이고 종합소득은 1년간의 소득이므로 시간(timing) 차이가 있고, 종합소득과세되는 소득과 양도소득 간에는 소득종류 및 원천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 소비능력의 증가 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1원의 양도소득과 1원

의 통상소득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포괄적 소득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 측면에서의 세부담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1975년 종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도입된 후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누진세율체계가 아닌 비례세율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설정된 비례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과 대비하여 중과세의 정책의지를 명백히 실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정책적 의의가 통상소득에 비해 중과세 또는 경과세하고자 했던 정책당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경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분리과세의 의의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주로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소득 실현이 비정기적이고 비주기적이라는 특성, 부동산이라는 자산소유로부터 발생한다는 수동성, 불로소득적 성격, 그리고 세무행정 측면에서 신고·결정·징수상 차이를 들 수 있다. 자진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의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의 경우 도입 이후 1998년까지 정부부과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결정 및 징수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행정상의 차이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원천, 성격, 시간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택하게 되는 의의는 과세양도차익의 실지양도차익 대비 낮은 과표현실화율에서 찾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매년 1~2회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신고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고려가 감안되었을 수 있다.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51

<표 II-1>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변화 추이  
(1989년~현재)

(단위: %)

연 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과세표준	세율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세율
89. 1. 1~ 90. 12. 31	250만원 이하	5			
	500만원 이하	10			
	8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20			
	1,700만원 이하	25			
	2,300만원 이하	30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50				
91. 1. 1~ 92. 12. 31	400만원 이하	5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40 45 50 55 60	60
	1,000만원 이하	16			
	2,500만원 이하	27			
	5,000만원 이하	38			
	5,000만원 초과	50			
92. 1. 1~ 93. 12. 31	400만원 이하	5	(국민주택)	30	
	800만원 이하	10			
	1,600만원 이하	20			
	3,200만원 이하	30			
	6,400만원 이하	40			
	6,400만원 초과	50			
94. 1. 1~ 95. 12. 31	400만원 이하	5			
	800만원 이하	9			
	1,600만원 이하	18			
	3,200만원 이하	27			
	6,400만원 이하	36			
	6,400만원 초과	45			
96. 1. 1~ 98. 12. 31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10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30 40 50	50
		20			
		30			
99. 1. 1~ 2001. 12. 31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30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20 30 40	40
		40			
		40			
2002. 1. 1. 이후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9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8	1,000만원 이하	9	36
		27	4,000만원 이하	18	
		27	8,000만원 이하	27	
		36	8,000만원 초과	36	

주: 1) 국민주택은 1996. 1. 1부터 폐지됨.

<표 II-2>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간 상대적 세부담 비교  
(1996~1998년)

(단위: %, 천만원)

구분 과표 <sup>1)</sup>	양도 소득세 <sup>2)</sup>	기타 종합소득액 <sup>3)</sup>										
		0	1	2	3	4	5	6	7	8	...	∞
1	30.0	1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40.0		40.0
2	30.0	15.0	20.0	20.0	25.0	30.0	30.0	30.0	35.0	40.0		40.0
3	30.0	16.7	20.0	23.3	26.7	30.0	30.0	33.3	36.7	40.0		40.0
4	32.5	17.5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0.0
5	34.0	20.0	24.0	26.0	28.0	32.0	34.0	36.0	38.0	40.0		40.0
6	35.0	21.7	25.0	26.7	30.0	33.3	35.0	36.7	38.3	40.0		40.0
7	37.1	22.9	25.7	28.6	31.4	34.3	35.7	37.1	38.6	40.0		40.0
8	38.8	23.8	27.5	30.0	32.5	35.0	36.3	37.5	38.8	40.0		40.0
9	40.0	25.6	28.9	31.1	33.3	35.6	36.7	37.8	38.9	40.0		40.0
10	41.0	27.0	30.0	32.0	34.0	36.0	37.0	38.0	39.0	40.0		40.0
11	41.8	28.2	30.9	32.7	34.5	36.4	37.3	38.2	39.1	40.0		40.0
12	42.5	29.2	31.7	33.3	35.0	36.7	37.5	38.3	39.2	40.0		40.0
∴												
100	49.1	38.7	39.0	39.2	39.4	39.6	39.7	39.8	39.9	40.0		40.0
∴												
∞	5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주: 1) 과표는 연간 (누적)양도소득 총액이며, 소득공제 등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음.

2) 양도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양도소득에 대한 평균 세부담 비율

3)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양도소득 외에 종합소득(통상소득)이 없는 경우(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증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임.

II.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53

<표 II-3>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간 상대적 세부담 비교  
(1999~2001년)

(단위: %, 천만원)

구분 과표 <sup>1)</sup>	양도 소득세 <sup>2)</sup>	기타 종합소득액 <sup>3)</sup>										
		0	1	2	3	4	5	6	7	8	...	∞
1	20.0	1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40.0		40.0
2	20.0	15.0	20.0	20.0	25.0	30.0	30.0	30.0	35.0	40.0		40.0
3	20.0	16.7	20.0	23.3	26.7	30.0	30.0	33.3	36.7	40.0		40.0
4	22.5	17.5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0.0
5	24.0	20.0	24.0	26.0	28.0	32.0	34.0	36.0	38.0	40.0		40.0
6	25.0	21.7	25.0	26.7	30.0	33.3	35.0	36.7	38.3	40.0		40.0
7	27.1	22.9	25.7	28.6	31.4	34.3	35.7	37.1	38.6	40.0		40.0
8	28.8	23.8	27.5	30.0	32.5	35.0	36.3	37.5	38.8	40.0		40.0
9	30.0	25.6	28.9	31.1	33.3	35.6	36.7	37.8	38.9	40.0		40.0
10	31.0	27.0	30.0	32.0	34.0	36.0	37.0	38.0	39.0	40.0		40.0
11	31.8	28.2	30.9	32.7	34.5	36.4	37.3	38.2	39.1	40.0		40.0
12	32.5	29.2	31.7	33.3	35.0	36.7	37.5	38.3	39.2	40.0		40.0
∴												
100	39.1	38.7	39.0	39.2	39.4	39.6	39.7	39.8	39.9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주: 1) 과표는 연간 누적양도차익 또는 매매차익이며 단위는 천만원임.
- 2) 일반개인의 단순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평균세율로 표시한 것임.
- 3) 표상의 수치는 매매차익 이외의 기타 종합소득액이 없는 경우(0)에서부터 무한대의 기타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종합소득 세액부담을 매매차익으로 나눈 세율임.



### Ⅲ.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 1. 법체계의 영향: 보통법 대 민법

일반적으로 세법은 헌법, 행정법, 민법, 그리고 국제법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조세부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포함한 헌법구조, 사법(부)구조 등의 측면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틀 내에서 영향을 받으며, 규제의 역할 및 과세당국의 규칙 그리고 납세자와의 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법에 영향을 받으며, 조세협약 및 국제조세 모델 등 분야에서는 국제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법은 민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 성립 이후 각국의 민법은 계약, 재산, 불법행위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조세가 부과되는 민간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법적인 측면에서 이들 분야의 범위에 거의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과 세법 간의 일반적 관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들, 그리고 회사법이나 상법 등 기업형태에 따른 과세 등의 측면에서 그 나라의 민법체계 및 법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법 전통에 따른 입법방식의 차이점으로, 법조문의 구체성 정도가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대륙식 민법국가들에서는 일반법원칙의 형태로 입법화되어 이러한 원칙들이 개별적 사례에 적용될 때의 적용문

---

16) 전세계 국가들의 법 전통 및 법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로마법, 영국 보통법, 프랑스민법, 독일민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작성시 일부러 상세한 세부규정들을 가급적이면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것이 대륙식 입법체계의 전형이다. 대조적으로 영미식 보통법체계에서는 법안 작성시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가능한 한 많은 구체적 사례들이 해당되도록 하고 법원은 특정 법조문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 및 사법부의 역할 간의 차이는 보통법과 대륙식 민법체계간 일반적인 차이일 뿐 개별 국가별로 법의 종류와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대륙식 민법국가들에서의 세법은 오히려 더 구체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구체성의 정도는 입법부가 입법권한의 위임을 어느 정도나 사법부에 허용하느냐에도 달려 있는데, 이는 그 나라의 전통이나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받기도 하고 행정법의 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영미식 보통법 국가들에서는 조세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조세원칙 중 많은 것들이 조세의 '보통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대륙식 민법체계 국가에서나 입법부가 세법을 법전으로 명문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세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법조문을 해석한다는 미명하에 방대한 조세분야 보통법이 축적된 경우도 있다<sup>17)</sup>.

보통법(common law)체계하의 국가군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영연방(commonwealth)을 구성하고 있거나, 과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거나, 아니면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를 통칭하여 보통법 전통(common law

17) 미국의회는 언제든지 사법부의 조세분야 판결을 무효화(override)시킬 수 있지만, 연방의회가 명시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명시적 조문이 없는 경우에만 연방법원들이 개입을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57

tradition) 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들 국가군에 있어서의 조세제도는, 포괄적 과세요건(broader legal principle, standard), 그리고 보다 강한 재산권(property rights)에 대한 보호기능<sup>18)</sup>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및 미국에 강한 영향을 받은 필리핀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미식 보통법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전통에 따라 법인격(legal entity)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법분야에서 차이를 보인다. 회사, 조합, 파트너쉽 등과 같은 사업주체는 대부분의 대륙식 민법국가체계에서 법인으로 정의된다. 프랑스나 스페인과 유사한 민법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societes, sociedades)도 법인이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업 형태를 갖고 있어서 참여자 개인별로 소득이나 자본이득을 분할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전에서 파트너쉽(Personengesellschaften)은 법인이 아닌 반면,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en)는 법인이다. 민법에서 형식적 구분을 하고 있고 파트너쉽은 중요한 형태의 상업적 파트너쉽을 포함하게 되는 상황에서 세법조문이 법인이라고 규정한 조문은 제한적 파트너쉽이나 일반적 파트너쉽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는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다른 법주체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조세문제에 있어서의 법적 주체 또는 신분을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법인은 세법전에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또 한가지, 법제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재산(property)에 대한 개념 및 분류에서 나타난다. 재산의 개념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세법에 일일이 유형별로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영

---

18) 법체계의 차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발전정도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로는, Shleifer and Glaeser(2000)가 있음.

미식 보통법체계에서 말하는 부동산(real property)은 대륙식 민법 체계에서의 부동산(immovable property)과 유사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법적 표현은 아니다. 또한 몇몇 대륙식 민법국가들 간에도 특이성들이 발견된다<sup>19)</sup>. 따라서 민법상의 부동산과는 다른 개념의 부동산들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별도로 세법상에 부동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유형재산, 무형재산, 고정자산 등 재산 및 자산관련 과세에서 발생한다.

한편, 유럽의 대륙식 민법체계국가(civil law states)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bright line rules: BLR), 그리고 상당히 제한적인 재산권 형태라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2인 이상이 동일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분할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심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대륙식 민법(civil law)체계 국가들에서 현저하게 발견되는데, 19세기 이후 ‘어떤 한 자산의 소유권 구성요소는 일인의 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일반법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매우 적은 수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예외들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체적 예외들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된 또는 부분적 재산권은 집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럽법은 일반적으로 민간신탁(private trust)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적 소유권(legal title)은 수탁자(trustee)에게 있고 수익적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있는 등, 신탁상의 특수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분할하는 것은 대륙식 민법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열거한 재산권 분할유형이 아니다<sup>20)</sup>.

19) 러시아의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비행기나 사업까지도 포함하는 특이성이 있음.

20) 물론, 유럽의 대륙식 민법(civil law)국가들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은 아니고, 특히 미국을 포함한 보통법(common law)국가들에서의 법원칙도 비슷한 특성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 Ⅲ.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59

마지막으로 영미식 보통법, 프랑스식 민법, 독일식 민법과 같은 법적 전통에 따라 소득 및 자본이득을 세법 측면에서 국가군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세계적으로 ① 영미식 ② 프랑스식 ③ 북구식(독일식, 네덜란드식, 북구식, 벨기에식) ④ 남부유럽식(포르투갈식,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그리스식 등) ⑤ 남미식 ⑥ 체제 전환국식 ⑦ 기타식으로 구분된다(<표 III-1> 참조). 특히, 북구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스위스·룩셈부르크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법체계를 갖고 있고,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의 북구(Nordic)국가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체계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독자적인 유형의 소득 및 자본이득세제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의 경우 민법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법전통을 갖고 있으나 세법분야에서는 유럽대륙식과 미국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0> 소득세법 현황

유 형	해 당 국 가
1. 영국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 캐나다, 키프로스,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가나, 인도,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탕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영국, 잠비아, 짐바브웨
2. 미국	라이베리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필리핀, 미국

&lt;표 III-1&gt;의 계속

유 형	해 당 국 가
3. 북유럽	
a.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b. 네덜란드	네덜란드, 수리남
c. 노르딕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d. 벨기에	벨기에
4. 남유럽	
a. 포르투갈	앙골라,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포르투갈, 상투메프린시페
b. 이탈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산마리노, 소말리아
c. 스페인	기니, 스페인
d. 그리스	그리스
5. 프랑스	알제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프랑스, 가봉, 기니, 아이티,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토고, 튀니지
6. 중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7. 체제전환국	
a. 발틱, 러시아, 구 소비에트연방국가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라트비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b. 기타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라오스, FYR 마케도니아,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베트남
8. 기타 유형	아프가니스탄, 부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한국, 시리아, 태국, 터키, 예멘공화국

자료: V. Thuronyi, *Tax Law Design and Drafting*, 2000.

## 2. 북구 등 국제적 자본주변국: 노르딕 및 네덜란드(2001)

국제적 금융자본시장(financial capital market)의 통합으로 국제적 자본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해외원천 자본소득의 거주지국 과세가 조세협약 및 세무행정상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자, 종전의 포괄주의 소득과세하에서의 세율 확장 및 세율 경감(base broadening & rate cut) 세제개편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자본 중심국가들의 경우 자본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포괄적 소득세제하에서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를 설계하고 있다.

이원적 소득과세제도란, 일종의 소득유형별 차등과세 방안으로서 자본소득을 타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 현상에 대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스칸디나비아 3국 등 북구권 내 자본주변국들에서 논의되다가 1994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수동적 의미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final withholding tax)시키는 방법이 확산됨에 따라, 부분적 분류과세화(partially scheduled)가 추진되었다.

순수한 형태의 이원적 소득과세는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자본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동일한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존 소득세 누진세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소득과세의 구조적 측면에서만 보면 분류과세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또 한가지 특징은 분리과세되는 개인의 자본소득을 법인에 대한 소득세인 법인세율과 일치시키면서 노동소득 등에 비해 경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부분적 분리과세화는 납세자들이 시차

(timing differences)나 상이한 소득 및 비용유형에 적용되는 세우대조치를 활용할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소득세 누진도를 사실상 증대시켰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도 있다<sup>21)</sup>.

네덜란드에서는 소득세법에 자본이득과세는 없지만 순부유세는 있다. 그러나 자본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산가치는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금융상품들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순부유세를 회피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소득세법(2001년)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득세 구조를 ① 근로 및 주택소유소득 ② 사업지분소득 ③ 저축 및 투자소득의 3가지 과세유형(box)으로 구분하여 각각 4단계누진(2.85~52%), 25% 비례세율, 30% 비례세율을 적용하면서, 소득유형간 공제(offsets)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제3유형<sup>22)</sup>인 저축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수익률을 4%로 가정하여 계산된 소득에 3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소득 규모에 의존하는 종전의 공제제도를 정액세액공제(levy rebates) 방식을 채택하는 등 추계소득과세방식(Presumptive formula tax approach)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의 복구권의 이원적 소득세와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의 개편이다.

21) Lief Muten et al., *Towards a Dual Income Tax?* (1996). 자본소득에 대해 이자비용이나 기타 손실들을 공제해주는 제도들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서, 분리과세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본소득의 과세베이스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임.

22) 과거에는 임대소득, 상장주식배당, 저축이자 등과 같이 당해연도에 실제로 수취한 소득에만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실현주의(realization)원칙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대신 4%라는 가정소득을 매년 자산의 실제가치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추계과세방식이 적극 도입됨으로써, 일종의 순부유세적 요소가 소득에 가미되면서 부유세를 폐지할 예정.

### 3. 부유세 부과 국가군

#### 가. 부유세의 개념과 의의

자본이득세에 대한 논의는 한 나라의 조세체계에서 부(wealth)에 대해 어떠한 과세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II장의 소득·소비·재산 과세 간의 관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흐름(income flow)을 ‘잠재적 소비변화’ 측면에서 과세베이스로 잡는 반면, 부와 같은 저장·스톡(stock)에 대해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소비능력과 실제소비 사이의 차이는 매기간별로 저축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누적적으로 축적되는 결과물은 바로 자산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 평가한 부라는 스톡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부유세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세는 실제 소비용으로 판매된 상품가치를 과세베이스로 하고, 순부유세는 개별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순부(개인: net wealth, 법인: net worth)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과세(asset taxation)의 일종이다. 순부유세는 그 명칭이 부유층에 한정하여 과세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 납세의무자는 중산층을 포함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이다. 독일에서는 순부유세의 부과를 위해 자산평가를 할 때 자산종류 간에 가치평가의 균일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sup>23)</sup>.

23) 독일 헌법재판소는, 토지자산의 경우 196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1964년 평가액에 40%를 추가(mark-up)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면서 증권 등 금융자산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순

순부유세 시행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요 특징들만을 모아 순부유세의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정기적으로, 주로 개인이 보유한 동산·부동산 등 자산의 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부 내지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국세이다. 또 그 주된 과세목적과 기능은 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부유세를 다른 자산과세인 지방재산세, 상속세·증여세 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순부유세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유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property tax)와 다른 점은, 부과주체 및 세수 사용권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고, 세원인 재산을 개별적으로 포착한 物稅(in rem)가 아니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소유한 재산의 합산가액을 기초로 과세하는 人稅(ad personam, personal)이므로 인적기초공제가 있고,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의 가액(ad valorem)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납세자의 타소득에서 납부되어 명목적 자산세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납부소득세액과의 합산에 의한 과세상한과 같은 소유재산의 원본잠식 배제장치가 없다.

둘째, 상속세·유산세(inheritance, estate tax), 증여세(gift tax)와의 차이점은 인세이면서도 세대간 및 타인에 대한 자산이전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는 실질적 자산세가 아닌 명목적 자산세이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

부유세(Vermögensteuer)의 세부담 균등화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1995년 6월 22일에 내림. 특히 입법부가 1996년 말까지 과세표준 설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으면 현행 세법규정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결정함.

### Ⅲ.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65

소득세체계 내에서 종합 또는 분리 과세되는데, 이는 자산소득 또는 자본이득이라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이지 부유세와 같이 자산이라는 저장(stock)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 나. 부유세 과세의 목적

부유세의 「소득세의 보완론적」 기능은 세제와 세정의 양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부유세는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를 대치하거나 높은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도입된 사례가 많았던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 누진세율 중 최고 한계세율이 갖는 탈세유인과 근로 및 투자의욕 감퇴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부유세와 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과세상한규정이나, 소득세의 자본소득 합산규정을 준용하여 과세단위를 선택한다거나, 소득세 인적 공제제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적 기초공제액을 결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세제적으로 소득세를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II-3>~<표 III-6> 참조).

둘째, 자산소득이라는 유량(flow)에 대한 소득과세는 자산이라는 저장(stock)에 대한 수익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흐름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자산과세보다 세무행정부담(administrative cost)과 조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상 기반이 취약하여 자산소득과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과세의 탈루가 많은 경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유세를 독립적으로 신설할 제도적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순부유세의 개념이 순부의 가치에 대해 부부 또는 세대를 과세단위로 소득발생 또는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비례 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중앙정부의 조세목적 중 하나인 「부의 집중배제」,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 「수

직적 공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질적 자산세이다. 여타의 많은 조세가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의 재분배문제를 달성하는 것과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경제개발 재원조달이나 부유층의 사치적 소비억제 등을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유세는 그 자체만의 존립목적이 아니라 재산관련 타세목의 과세행정을 정상화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부를 구성하는 각종 재산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소득에 대한 타세목의 과세를 위하여 저량(stock)과 유량(flow)의 양면에서 세원관리와 과세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타세목의 세제 및 세무행정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부유세와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적재산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도 과세공부와 신고내용 간의 정기적인 상호대사(cross-checking)를 통해 과세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활용에 도움이 된다.

#### 다. 순부유세 과세국가 현황

순부유세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우루과이가 시행중이고 일본도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sup>24)</sup>,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70여년 이상의 오랜 시행 역사를 갖고 있다<sup>25)</sup>.

24)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1960년대를 전후하여 칼도(Nicholas Kaldor)의 세계개혁 권고안을 받아들여 부유세를 도입·시행중이며, 일본은 사우프사절단(Shoup mission)의 권고로 3년간(1950~53)의 시행 경험이 있음.

25) 네덜란드는 1892년, 덴마크는 1904년, 스웨덴은 1910년, 노르웨이는

###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67

2002년 현재 시행중인 7개 유럽국가 중 비교적 근래에 도입한 스페인(1978), (재)도입한 프랑스(1982, 1989), 도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 영국(1974~75), 향후 방향을 검토한 핀란드 등에서는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가 순부유세 도입의 목적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부유세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불균일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1997년부터 부유세가 폐지된 독일, 2001년부터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식을 도입한 소득세법 전면개편으로 부유세가 폐지된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유세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순부유세 도입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 현재의 유지 이유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기의 도입 목적은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소득세 보완적 기능」에 있다. 첫째, 20세기 초 부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부동산은 가시적인 자산으로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용이한 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은 세원 포착이 어려운 세무행정상의 애로를 감안한 소득세정의 보완기능이다. 둘째,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담세력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소득하에서도 양 종류의 소득간 수평적 공평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제의 보완기능이라는 의미이다. 부유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과세최저한이 상당히 낮거나, 비례세율이건 누진세율이건 세율이 낮아서, 명목적 재산세<sup>26)</sup>로서의 소득소멸형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특히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보완적 기능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

1911년, 독일은 1922년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고, 룩셈부르크는 1944년, 아일랜드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

26) 재산에 대한 조세를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조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는 자기의 소득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어 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음.

수 있다.

<표 III-3>~<표 III-6>은 1996년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했던 11개 유럽 국가들의 부유세제도를 부과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자산 등의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며, 각각의 표는 비록 상이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과세 형태(부유세제도의 유형)를 갖는 국가들로 분류한 것이다. <표 III-3>의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 모두 누진세율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이 중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근래에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여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다. <표 III-4>의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중 독일, 네덜란드는 폐지 직전의 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sup>27)</sup>로 부유세의 세수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다(<표 III-7> 참조). <표 III-5>의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전반적인 조세체계가 유사한 북구(Nordic)국가들로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표 III-6>의 오스트리아에서는 1994년 1월 1일 부로 폐지되었고, <표 III-5>의 덴마크는 1997년부터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아래에 소개하는 11개 국가 중 프랑스는 유일하게 1982년 사회당의 집권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사회당과 보수연합 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1987년의 폐지와 1988년의 부활을 거듭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좌파정치철학을 대변하는 세제이다<sup>28)</sup>.

27) 이들 국가 외에 <표 III-6>의 스위스도 법인에게 부과하지만 스위스는 지방정부는 개인에게, 연방정부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독특한 국가이므로 기타 국가로 분류하였고, <표 III-3>의 노르웨이도 법인에게 부과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부과하므로 달리 분류하였다.

28) 아일랜드도 1975년부터 부유세를 채택하였으나 정부가 교체된 후인 1987년에 폐지하여 정권의 조세철학에 따라 세목의 채택·폐지를 겪은 국가이다.

Ⅲ.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69

법인에 대한 부유세는 폐지하는 추세가 일반적이어서 현재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만이 과세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법인의 자본축적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법인의 순소득을 주주에게 배분·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III-2> 순부유세 도입 및 운영국가 현황(2001년 현재)

순부유세 유지(7개국)	순부유세 운영 경험국	순부유세 미경험국
핀란드	오스트리아(1923~1993)	호주
프랑스	덴마크(1903~1996)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1922~1996)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1982~2000)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
		미국

&lt;표 III-3&gt; 각국의 부유세제도: 누진세율 국가(2001)

국가 구분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ISF)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창설연도	1982년, 1987년 폐지, 1989년 부활	1978년	1914년
부과주체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 국세(세수는 州정부에)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모두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개인 : o, 법인 : x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소유 자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개인 : o, 법인 : x -거주자: 주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 하는 전세계 소유순자산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부부재산공유·별산에 따라 결정	-개인: o, 법인: x(1992년 폐지)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비거주자: 국내자산 소유자 -부부 합산과세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사업용자산 <sup>1)</sup> 및 25% 초과 주 식 소유 이사 제외 -동산: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금융자산: 소액저축, 연금, 생 명보험 -기타: 거주주택, 영업권	-부동산 -동산: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기타: 미술품 등, 거주주택, 특허 권, 저작권, 영업권	-부동산: 해외부동산제외 -동산: 가재도구 -금융: 소액저축: 30,000NOK 생명보험: 50,000NOK -기타: 거주주택(시장가치의 20~ 30%)
과세 표준 <sup>3)</sup> 및 기초공제	-세대당 72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자산액	-기초공제: 주정부별 차등화된 거주 자 1인당 공제액 설정. 표준공제액 은 108,182유로	-기초공제 • 거주자 1인당 1십만 NOK기초 공제
세율과 과세상한	누진세율구조 72만~116만 유로: 0.55% 116만~230만 유로: 0.75% 230만~360만 유로: 1% 360만~690만 유로: 1.3% 690만~1,500만 유로: 1.65% 1,500만 유로 초과: 1.5%	누진세율구조 0~167,129유로: 0.2% 167,129~334,253유로: 0.3% 334,253~668,500유로: 0.5% 668,500~1,337,000유로: 0.9% 1,337,000~2,674,000유로: 1.3% 2,674,000~5,348,000유로: 1.7% 5,348,000~10,696,000유로: 2.1% 10,696,000유로 초과: 2.5%	-지방정부: 120,000NOK초과분 0.7% 단일비례세율(0.4~0.7%내 에서 결정) -중앙정부: 누진세율 구조 • 비거주자, 독신거주자 120,000~540,000: 0.2% 540,000초과: 0.4% • 부양자있는 거주자 150,000~580,000: 0.2% 580,000초과: 0.4%
	-과세상한 <sup>2)</sup> : 소득세와 순부유 세 합계액이 전년과세소득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 합세 액이 과세소득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과세상한: 통상소득의 80%를 초 과하는 중앙부유세납세자는 지방 부유세 경감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71

<표 III-3>의 계속

국가 구분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ISF)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평가방법 및 주기	-1년(과세연도 1월1일 기준) • 개인소유동산, 부동산 시장 가치 • 주식: 거래가격 • 생명보험: 상환가액 • 연금: 실제수령액 • 농지: 시장가격 • 입야: 시장가격의 75%	-1년 • 개인소유동산·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 생명보험: 상환가액 • 농지·입야: Rural Tax 과표의 4% • 저작권 등: 시장가격	-1년(년말) • 개인소유동산: 보장가치에 비례 • 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과세: 주식이나 지분  - 52.75%	-비과세: 문화유산, 생활필수품, 개인연금,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지자소유의 지적재산권등, 영업에 사용되는 소유재산, 주식, 지분  - 48%	-비과세: • 해외부동산 • 해외부동산소유 비거주법인의 지분을 95%이상 소유한 거주 자가 독신이거나 동거인 9인이 하인 경우, 해외부유세납부세액 공제  -37.15 % = (19.5(국)+17.65(지방))

주: 1) 프랑스에서 주식이나 지분은 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됨.

2) 이러한 순부유세 및 소득세 합계액의 課稅上限(maximum tax burden)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순재산가액이 1,516만 프랑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합계세액과 과세최대한도의 차액에 대한 완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①순부유세액의 50%와 ②제2과표계급(764만~1,516만 프랑)의 상한인 1,516만 프랑에 대한 순부유세액인 67,340 프랑 중 적은 금액에 한해 부분공제됨.

3) 과세표준=총재산가액-채무-인적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8*, 2002로부터 재구성.

<표 III-4> 각국의 부유세 제도: 법인과세형<sup>1)</sup> (1998, 2001)

국가 구분	독 일 (Vermögensteuer)	네덜란드 (Vermogensbelasting)	룩셈부르크 (Impôt sur la fortune)
창설 연도 <sup>2)</sup>	1922년, 1997년부터 폐지	1982년, 2001년부터 폐지	1913년
부과주체	-중앙정부, 주(州)세(세수는 주정부에)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 국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개인: ○, 법인: ○ -거주자: 이중과세 조약, 면세제 외한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비거주자: 독일 국내의 평가액 20,000DM 이상의 순자산 소유 자 -세대별과세	-개인: ○, 법인: x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비거주자: 국내소재 특정자산 소 유자 -부부합산과세(자녀소유자산은 별 도)	-개인: ○, 법인: x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비거주자: 국내 소재 특정 자산 -세대별과세(부부 및 미성 년자녀 포함)
과세 표준 <sup>3)</sup> 및 기초공제	-개인: 평가법에 의한 순자산 - 기초공제 -사업용 자산: 50만DM의 기초공 제 후 75%만 과세표준으로 계산 -기초공제: 1인당 12만DM -법인: 2만 DM면세점	-자산에서 부채공제후 -공제: 연금, 상해·생명보험 -사업주,주주의 영업용자산: 211,000NLG까지 공제후 초과분 의 68% -기초공제: • 독신자 및 별거기혼자: 193,000NLG • 기혼부부: 241,000NLG	-전세계 자산 - 부채 -기초공제: 1인당 2,500(부 부는 2배이며, 미성년자녀 1인당 2,500유로씩 증가)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부동산: 농지,임야,토지,영업용자 산, 기타동산·권리 -동산: 보석:10,000DM 초과분, 선박: 35,000DM까지 과세 -금융자산: 연금 • 소액저축: 100,000DM 이상 • 생명보험: 10,000DM 이상 -기타자산 • 미술품 등: 20,000DM 초과분 • 거주용주택	-부동산 -동산: 보석: 6,500NLG 초과분, 자 동차, 선박 -금융자산: 소액저축 -기타: • 거주주택: 시장가치의 60% • 저작권·특허권 -이중공제허용: 주가 다른 경우 영 구설비의 순사업용자산, 부동산 등	-부동산 -저축예금 및 상장주식공 제: 37,500유로, 부부의 경 우 2배 공제액 허용 -보석: 12,500유로 초과분, 선박: 사치품인 경우 -특허권: 75,000유로 초과 -미술품 등: 25,000유로 초과분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73

<표 III-4>의 계속

국가 구분	독 일 (Vermögensteuer)	네덜란드 (Vermogensbelasting)	룩셈부르크 (Impôt sur la fortune)
세율과 과세상한	-개인: 1%(농림지·사업용자산·주식: 0.5% 경감세율) -법인: 0.6%	-개인: 0.8% -과세상한: 소득세 + 부유세 > 과세소득의 68% → 신청시 환급	-거주자, 비거주자: 0.5% -법인의 지방 순부유세는 1997년부터 폐지
평가방법 및 주기	-평가법(Bewertungsgesetz,1993)에 의함 •농림재산, 토지 : 6년 •사업용 재산 : 3년 •주식 : 시장가치	- 1년 •부동산: 시장가격 •주식,임야·저작권등: 시장가격 •농지: 임대가	- 1년(년초) •기본적으로 정상시장가격으로 평가, 자산 따라 평가 방법 차등적용. •매3년 마다 수시평가하며, 그 사이연도는 순부가 20% 또는 75,000유로 이상 증가한 경우만 개정.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구동독지역에 대한 비과세 - 53% (별도 지방사업소득세 12~25% 있음)	- 60%	- 50% (별도 지방소득세 “4% × (1.8~3)” 있음) 룩셈부르크시의 경우 10% 한계세율

주: 1)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명명하였음. 단, 네덜란드는 1992년 법인에 대한 부유세 폐지.

2) 독일은 부유세를 1997년부터,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폐지하였으며 폐지전의 부유세내용임. 룩셈부르크의 개인의 경우에 순자산에 대한 市사업세는 1997년부터 폐지됨.

3) 과세표준=총재산가액-채무-인적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8, 2002*로부터 재구성.

<표 III-5> 각국의 부유세 제도: Nordic 국가(2001, 1997)

국가 구분	스웨덴 (Statlig förmögenhetsskatt)	핀란드 (Varallisuusvero; förmögenhetsskatt)	덴마크 <sup>1)</sup> (Formueskat til staten)
창설연도	1910년	1920년	1903년 도입, 1997년 폐지
부과주체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 국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단위	-개인: o, 법인: x -거주자: 1백만 SEK(부부합 산:1.5백만)초과하는전세계 순 자산 -비거주자: 국내소재자산 -세대(부부,자녀합산)후 안분	-개인: o, 법인: x(법인소유 주식은 과세대상임), 기타단체: o(1%)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부부합산과세, 자녀합산과세	-개인: o, 법인: x -거주자 -비거주자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부동산 -동산: 보석, 자동차, 선박 -금융: 현금,주식(시가의 80%) -기타: 거주주택	-부동산 -동산: 고가보석, 자동차, 선박 -금융자산: 현금 -기타: 고가미술품, 거주주택 등 환가 가능한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자동차, 선박 -금융자산: 소액저축 -기타: 주거주택, 특허권, 저작권 등(저자소유는 면세)
과세 표준 <sup>2)</sup> 및 기초공제	-일종의 면세점으로 개인의 경 우 1백만 SEK, 부부합산신고 의 경우 1.5백만 초과금액	-기초공제 •거주기혼자: 17세이하 부양자녀 1 인당 2,000유로씩 -자가거주주택공제: 10,000유로 -자산별 채무액공제	-기초공제: 2,400,000DKK (기혼자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배우자에게 이전가능)
세율과 과세상한	-1.5% (단일세율)	-185,000유로까지: 80유로 그 초과분: 0.9%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 사회 보장세 합계액이 통상과세소득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0.7%(1996)
평가방법 및 주기	-1년(전년말) • 시장가격 평가원칙 • 예외: 부동산은 시장가격의 75%(5년마다 평가) • 주식: 거래가격 • 현금: 실제 수령액	-1년(년말) • 정상시장가격 평가원칙 • 사업용자산은 장부가액 • 상장주식 등: 폐장일종가 70%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매년 12/31 • 개인소유통산: 시장가격 • 부동산: 평가시점의 시장가격 (4년마다 평가) • 주식: 시장가격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25% (별도 지방소득세28~31%) -비과세: 비상장주식, 사업용재 산	-36% (별도 지방소득세 15~19.75%) -비과세: 현금, 위자료, 자녀양육비, 상속재산지분 등	-40% (별도로 지방소득세 29~34%)

주: 1) 덴마크는 1997년 부유세 폐지된 기준임.  
2) 과세표준=총재산가액-채무-인적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8, 2002*로부터 재구성.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75

<표 III-6> 각국의 부유세 제도: 기타(1997)

국가 구분	오스트리아 <sup>1)</sup> (Vermögensteuer)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Vermögensteuer)
창설연도	1923년, 1994년 폐지	1909년부터 법인에 대한 연방부유세 폐지
부과주체	중앙정부, 국세	-주정부+기초자치체 (지방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	-개인: o, 법인: x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비거주자: 국내 소재자산 -세대별 과세	-개인: o, 법인: x -거주자: 해외부동산 제외, 국내의 외국소유 영업소 제외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영업소주별로 차이 있음) -세대별 과세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부동산 -동산:보석(150,000SCH 초과분), 자동차, 선박 -금융: 소액저축 250,000SCH까지 면세, 연금, 생명보험 -기타: 미술품 등(300,000SCH초과분)	-부동산 -동산: 보석, 자동차, 선박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기타: 미술품 등, 거주주택, 영업권
과세표준 <sup>2)</sup> 및 기초공제	-기초공제 •독신자:15만 ATS •부부:30만 ATS •부양자녀 1인당 15만 ATS -법인세면세점:주식회사 100만ATS, 유한회사 10만ATS, 기타 15만ATS	-기초공제: canton 별로 차이있음. 예)Zurich: •기혼자(이혼자, 자녀있는 독신자 포함): 132,000CHF •독신자: 66,000CHF
세율과 과세상한	-1%	-Canton 별로 기본율에 따른 세율상이 (Zurich의 경우 ~199,000CHF 0.05% ~331,000CHF 0.1% ~530,000CHF 0.15% ~735,000CHF 0.2% ~735,000CHF 0.25% 2,650,000CHF이상 0.3% -매년 Canton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효세율=기본세율×승수로 부유세 부과 Zurich의 경우: 1.08%(1998)
평가방법 및 주기	-3년 •개인소유부동산 시장가치 •비업무용부동산: 평균건설비기준(9년마다 평가) •주식: 재무성 •보험: 가산금 또는 상환액의 2/3 •농지·임야: 표준산출액(9년마다 평가) •특허권, 저작권: 3년간 평균지불액	-2년 •부동산: 시장가치 •주식: 거래가격 •연금: 보상액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50%	- 11.5%(별도 지방세 소득세 있음)

주: 1) 오스트리아는 1994년 부유세 폐지전 기준임.

2) 과세표준=총재산가액-채무-인적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8, 2002*로부터 재구성.

#### 라. 각국의 시행 경험과 경제적 효과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유세도 ① 세수확보의 충분성 ② 세제의 단순성 및 세무행정의 편의성 ③ 형평성의 제고 ④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시행 경험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중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시행국가에서 실시 동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3가지 측면에서 각국의 시행 경험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순부유세의 징수액은 순부유세 부과대상 범위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III-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유세의 비중은 법인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군과 개인에게만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군 간에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2000년 세수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법인에게까지 부유세를 부과하는 룩셈부르크(7.3%), 스위스(3.6%), 노르웨이(1.2%)는 부유세의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개인만을 부유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그 외의 국가는 0.1~0.7% 범위의 극히 낮은 세수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부유세제의 유지 및 운영이 재산관련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감안한다면 부유세만의 총조세수입 비율만으로 순부유세제도의 세수기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유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조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는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소신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이 적정한 세무조사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부유세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포착률(disclosure rate) 상이성, 그리고 공개거래시장의 존재 정도에 따른 과표율(assessment ratio)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보석, 서화·골동품,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77

<표 III-7> 순부유세의 세수비중<sup>1)</sup>

(단위 : 백만 자국통화단위<sup>2)</sup>, 백만 유로<sup>3)</sup>, %)

연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핀란드	세액	145	279	155	210	282	309	59	87	179
	비율	0.21	0.21	0.07	0.08	0.10	0.11	0.11	0.15	0.29
프랑스 <sup>4)</sup>	세액	-	13,258	17,155	27,111	18,958	24,934	3,496	3,476	3,077
	비율	0.00	0.63	0.60	0.79	0.53	0.67	0.59	0.56	0.48
스페인	세액	17.78	23.63	105.95	104.00	107.00	126	893	1,028	1,164
	비율	0.49	0.29	0.61	0.44	0.43	0.46	0.50	0.52	0.54
스웨덴	세액	717	1,871	3,200	3,583	5,148	5,453	6,027	8,590	8,223
	비율	0.28	0.43	0.42	0.44	0.59	0.58	0.61	0.82	0.72
네덜란드	세액	1,140	940	1,220	1,500	1,430	1,690	670	782	873
	비율	0.74	0.50	0.53	0.54	0.50	0.55	0.47	0.51	0.53
룩셈부르크	세액	1,711	3,281	7,014	10,927	12,541	13,801	401	493	621
	비율	2.80	3.10	4.67	4.86	5.34	5.34	5.94	6.55	7.28
스위스	세액	2,201	2,733	3,736	4,746	4,896	4,982	5,294	5,403	5,233
	비율	4.20	3.75	3.78	3.86	3.88	4.00	4.02	4.04	3.62
노르웨이	세액	1,450	2,623	5,118	5,766	6,162	6,546	5,657	6,116	6,793
	비율	1.08	1.10	1.67	1.49	1.47	1.41	1.17	1.23	1.18
독일 <sup>5)</sup>	세액	8,532	7,672	12,152	13,546	15,226	8,318	543	537	433
	비율	1.52	1.10	1.37	1.00	1.13	0.61	0.08	0.07	0.06
오스트리아 <sup>5)</sup>	세액	5,517	5,744	8,836	803	570	309	6	7	1
	비율	1.35	0.99	1.19	0.08	0.05	0.03	0.01	0.01	0.00
덴마크 <sup>5)</sup>	세액	944	1,395	934	850	595	-	-	-	-
	비율	0.56	0.46	0.24	0.17	0.11	-	-	-	-
아일랜드 <sup>6)</sup>	세액	0.8	0.17	-	-	-	-	-	-	-
	비율	-	-	-	-	-	-	-	-	-

주: 1) 총조세액에 대한 순부유세의 비율임.

2) 1997년까지는 각국의 통화단위로 ATS는 오스트리아 실링 (schillings), DKK는 덴마크 크로너(Kroners), SEK는 스웨덴 크로나(kronas), NOK는 노르웨이 크로네(krones), FIM은 핀란드 마르카(markkas), FF는 프랑스 프랑(francs), DM은 독일 마르크(marks), NLG는 네덜란드 길더(guilders), ESP는 스페인 페스타(pesetas), 아일랜드 파운드(pounds)임.

3) 1998년 이후부터는 각국의 통화단위가 EURO임.

4)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1987년 일시 폐지하였다가 1988년 재차 도입하여 시행중임.

5) 오스트리아는 199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고, 독일과 덴마크는 1997년부터 폐지함.

6) 아일랜드는 3년간(1975~78년)간만 시행하였으므로, 징수액은 과년도분이고 1975년 비율은 0.3%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7*, 1998년, 2001년, 2002년

가재도구류는 공개거래시장에서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수집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유사실 여부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며, 비상장·장외주식 등은 추계적 과세평가방법에 의해서도 대부분 저평가되고 있다.

경상적인 소득이 아닌 부를 과세표준으로 경상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의 도입으로, 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며 자산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증과된다는 이론적 측면의 형평성 제고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일정액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부유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낮기 마련이고, 이미 부유세를 부과해 온 국가들의 부유세 부담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제고라는 분배효과는 부유세의 구체적인 시행 형태에 의존할 것이다.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 저축 및 투자 ② 소비유형 및 자산수요 왜곡 ③ 분배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축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축의 결과 축적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비지출을 늘려 저축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부유세가 비수익재산에까지 과세되므로 저축 감소효과의 크기는 소득세보다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본형성에 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및 보트)도 포함되므로 소비지출 중에서도 내구재와 비내구재 간의 지출 구성비율을 변화시킨다. 자산수익은 일반적으로 ① 보유기간중의 자산소득 흐름(capital income flow)과 ② 매각시의 자산가치 상승 또는 자본이득(capital apprecia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소득세와 부유세의 세부담 총액을 줄이기 위해 양자 중 자본이득 구성부분이 많은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부유세는 대체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자본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비자나 요소공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 Ⅲ.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79

결국 부유세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방법의 한계에서 출발하였다. 가시적인 부 자체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자산세를 운영하여 부의 불균등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세는 부 자체에 대한 교정적 조세로서의 기능보다는, 누진적 개인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계층의 과세소득 중 최고 세율구간소득(top slice)은 대부분 근로소득보다는 영속성이 강한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진도의 강화로 소득재분배의 실효성보다는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적인 법정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의 인화와 함께 부유세를 도입하는 조세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 4. 자본이득과세에서 자본시장 발전의 함의

경제성장과 자산의 축적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어느 나라도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현재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당해 연도에 소비하고 남은 성장의 과실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결국 저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문의 저축은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토지·건물 등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한편, 기업은 회사에 비축한 사내유보금이나 감가상각충당금 등 기업저축을 사용하여 생산설비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가계 등 외부부문으로부터 차입하게 된다.

이렇게 각 경제주체 부문별 (일정기간 동안의) 저축을 합제한 국가경제의 저축은 결국 생산설비·건물 등 실물자산과 대외채권 증가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일정시점에서의) 부문별 자산·부채 잔

액을 합계하면 부문간 채권·채무 잔액들은 상쇄되어 국내 유형자산과 대외 순자산의 합계로 나타난다. 즉, 저축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증가형태를 띠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저축의 한 시점에서 누계치는 자산총액 또는 국부로 나타나게 된다<sup>29)</sup>.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한 각종 자산들은 다시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라는 형태로 다음 期の 소득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유자산의 가격상승(capital appreciation)에 따라 가치분소득을 늘려주게 된다. 즉, 부는 미래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 자체로도 후생에 영향을 주므로 경제 전체로서의 국부이건 개별 경제주체의 순자산액이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실물자본의 구매·취득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실물 및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액 증가분은 자산(부)효과를 통해 민간소비지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정책당국은 경기안정화를 위해 보유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를 통해 재량적 재정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자본에 대한 과세문제는 경제성장 단계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발전패턴 등에 따라 각 시대 단계별로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게 된다. 정책당국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저축형성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실물자본량(capital stock) 자체의 증가와 제조업 등 산업부문으로의 유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통해 실물자본이 축적되게 되면서 국내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의 부 및 소득의 집중 완화를 위한 자본과세에 정책당국이 관심을 두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소득보다도 자본소득의 계층간 격차에 의

29) 국가경제 전체의 부, 즉 국부는 주택 등 (재생산가능) 유형자산(유형 고정자산+재고자산), (재생산 불가능) 토지 등에 대외 순자산의 합만을 매년 일정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금융자산이 빠지게 되어 국민총자산액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10년마다 국부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81

한 추가적인 부의 불균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의 결과 축적된 자산 및 부의 규모가 상당수준에 달하게 되면서 국내 및 국제자본시장이 통합화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조세아비트라지(tax arbitrage)를 노리는 금융상품들이 개발되는 단계를 들 수 있다. 결국 과세당국은 그 나라의 국부 또는 자산총액, 그리고 그 구성 내역에 대한 가치판단을 반영하여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과세가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총량적인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의 규모와 금융자산의 축적 정도를 비교한 지표인 금융연관비율을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의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융기관간 증권발행 및 유통에 따른 금융우회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다만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 중 실물자산은 매년 평가하기 쉽지 않아 국가간 비교시에는 분모로서 경상GNP, 경상GDP 등 유량변수를 대용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sup>30)</sup>.

금융시장 발전의 정도가 빠른 나라들은 이들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다른 원천의 소득대비 형평성 유지와 자본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율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980년 중반 이후 조세개혁을 주도했던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자본과세가 민간 가계의 각종 저축형태에 대한 수익률과 투자수익률 간의 괴리(wedge)를 야기시켜 금융중개의 정도와 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OECD(1994)와 Tanzi and King(1995)은, 금융자산의 취득, 보

---

30) 금융연관비율은 골드스미스(Goldsmith, R.W)가 경제성장과 금융구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 나라의 금융발전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처음 사용하였는데, 국민총자산의 국부 대비 비율에서 1을 차감한 수치는 결국 금융자산의 실물자산 대비로 나타남.

유,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을 국가별로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자본과세방식이 존재하며 효과 또한 매우 상이한데, 이유는 개인투자인지 중개기관투자인지의 정도, 그리고 민간저축이 기업 또는 정부로 유입되는지 등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상이한 자산유형에 대한 실효세율은 인플레이 및 자본과세를 어떻게 모형 내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둘째, 1970년대 이후 거시경제적 저축률 및 가계저축의 수준이 하락하고 1980년대 국가간 자본이동 급증에 따른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ECD 회원국들간에 경쟁적으로 시작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정책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가계자산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세가 '전반적인 가계저축 수준'에 미친 다른 요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 영향의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조세정책 변화는 가계의 자산구성 및 저축형태에 확실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연금(pension)이나 자가점유 주택자산(housing capital)에 대한 陰(-)의 한계실효세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후자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우대조항,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이자소득세율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이들 국가들의 자본소득 및 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소득 포괄성, 최적 과세이론 기준,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단순성, 그리고 세무행정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어느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이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부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83

은행예금, 국공채, 연금, 주식, 주택의 5개 가계저축 형태에 대해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OECD 국가들이 2000년 기준으로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결과는 부록의 <부표 1>~<부표 5>와 같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조세개혁 취지인 ‘과세베이스 확대 및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이자비용의 소득공제에 대해 보다 까다로운 제한을 하는 추세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납세 종결(final withholding)하는 국가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셋째, 북구권(Nordic) 국가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자본소득을 누진개인소득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국제화(globalization)로 자본 주변국의 경우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자주권의 약화와 조세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유세 부과를 통한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5. 실증분석: 자본이득과세의 결정요인

앞에서 우리는 자본이득에 대해 각국의 과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한 나라는 별로 없었으며 가장 먼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에도 1962년에 들어서야 자본이득과세를 시작했고 최초로 자본이득과세를 시작한 미국도 1922년부터였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한 경제 내에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이로부터의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이 발생되어야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통상소득에 비해 발생하는 규모가 세원으로 삼을 정도의 크기가 되기 전까지는 세무행정상의 높은 비용 그리고 과세

대상 자산의 세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또한, 어떤 나라들은 세제상 복잡성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상 애로 및 높은 납세순응비용, 그리고 낮은 세수를 이유로 여러차례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sup>31)</sup>. 특히 정보 및 신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자본이득의 존재 여부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경우 기존 실현주의 과세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주의(accrual) 또는 ‘시가기준(mark-to-market) 과세원칙’을 보편화하는 추세에 있고<sup>32)</sup>, 이는 자본이득과세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별 회계기준의 발전 정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8>은 본절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국제간 자본이득세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계량모형에 사용된 국가별 변수값들을 정리한 것이다. 동일한 기준에서 국가간 비교를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을 관찰자료에서 제외시켰다. 종속변수는 해당국에 자본이득과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의 사건을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나타내고 있다. 자본이득과세가 있다고 설정한 국가는 적어도 개인용자산에 대해 별도의 자본이득세나 개인소득세 내에서 과세하면서 부동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나라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상장주식

31) 남아프리카의 경우 Katz보고서는 자본소득을 자본이득 형태로 전환하여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다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차원의 고려가 복잡성, 세정당국의 관리능력, 납세순응비용, 낮은 세수 등의 애로요인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고 있음을 보고함.

32) 최초 발행시 할인발행된 할인채(discount bond)의 경우 채권 내에 묵시적인 이자부분(implicit interest)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으로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미국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유가증권 딜러(trader)들에 대해서는 IRS가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보유 유가증권이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시장가격에) 팔린 것처럼 시가주의(mark-to-market)에 의거 매매손익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85

의 경우 상당한 지분율 이상의 개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국가들은 비과세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나라에서의 공통점은 사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만큼의 지분거래는 사업용자산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장주식의 소규모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국으로 분류하였다.

설명변수로서, 그 나라의 소득분포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관련 3가지 변형변수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국가별로 가계소득 집중도를 조사한 자료의 해당기간이 상이하므로 연도별 지니계수의 평균을 취한 값의 백분율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은 조정지니계수인데 국가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산식을 이용한 것을 통일되게 조정한 것이다. 세 번째 변동률은 연간 지니계수 변동률을 해당국의 조사기간 동안 계산한 것으로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소득분포가 보다 평등하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법전통과 관련된 더미변수는 관찰대상국을 영미식 보통법체계, 프랑스식 민법체계, 독일식 민법체계, 그리고 북구식 법체계의 영향을 각 해당국 세법이 받았다는 가정하에 설정한 것이다. 계량분석 시에는 일종의 대조(contrast)를 위해 기준(baseline) 국가군을 영미식으로 설정함으로써 더미변수의 추계계수는 영미식 법체계와 대비하여 해당 법체계가 자본이득과세를 가질 확률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보고자 했다.

법치(rule of law) 변수는 해당국에서의 일반적인 행정에서 법치의 정도를 계량화한 것이고 회계기준 또한 해당국에서의 회계 발전 정도를 계량화한 변수이다<sup>33)</sup>.

1인당 GNP는 일종의 경제발전 단계가 자본이득과세의 존재 여

---

33) 법치지수는 국제 국가 위험도(International Country Risk)에서 발표하는 국가 위험도 등급에서 작성하는 해당국의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냄.

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것이고, GDP 대비 주식거래량은 주식시장 내에서의 거래 활성화 정도가 자본이득과세를 갖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III-9>에 나타나 있는데, 모델 I 은 더미변수들을 포함시킨 모형의 추정결과이고 모델 II는 더미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본 Probit 모형에 있어서의 적합도는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의 값을 갖고 판별하는데 상수항만 있을 때의 함수값과 설명변수들이 포함된 추정모형하에서의 함수값 간의 차이-이는 사실 우도비(likelihood ratio)에 대수(log)를 취한 것-를 갖고 검정하는데, 본 모델의 경우 21.96(모델 I)과 26.22(모델 II)이었으며 자유도 22에서 Chi-Square 임계값을 넘을 확률이 0.63이어서 전반적으로 적합성을 가졌다. 모델 I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상수, 평균지니계수, 법치, 일인당 GNP, 그리고 주식거래량 변수이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집중변수는 평균지니계수가 높아서 해당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할수록 자본이득과세를 가질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위적으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지만, 양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동 모델만을 갖고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한편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발전 단계상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경우였으므로, 자산시장의 발전 정도가 미흡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둘째, 국민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본이득과세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자산이 축적되고 이에 따라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선행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주식거래량이 많을수록 즉,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수

록 자본이득과세제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넷째, 법치 및 회계기준 변수는 예상했던 방향으로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즉, 회계기준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 정도가 높을수록 자본이득과세를 가질 확률이 적다는 결과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자본소득의 변형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경험을 고려한다면, 회계기준이 발달하고 법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없이 개인소득세 내에서 자본소득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섯째, 법체계 및 법전통에 영향을 미치는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부호로만 해석하면 독일 및 북구식 법제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영미식 보통법 체계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 비해 자본이득과세를 가질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추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lt;표 III-8&gt; 자본이득과세 여부 및 설명변수

	자본 이득 과세	지니계수			법진통				범치	회계 기준	1인당 GNP ('99)	GDP 대비 주식 거래량
		평균	조정 지니 계수	변동률	영미	프랑스	독일	북구				
호주	1	37.88	30.04	0.3467	1	0	0	0	10	75	17,500	0.604555
캐나다	1	31.27	23.43	-0.0567	1	0	0	0	10	74	19,970	0.458070
홍콩	0	41.58	33.74	0.2144	1	0	0	0	8.22	69	18,060	1.079486
인도	1	32.55	32.55	-0.0993	1	0	0	0	4.17	57	300	0.073664
말레이시아	1	50.76	42.92	-0.1700	1	0	0	0	6.78	76	3,140	1.749571
뉴질랜드	1	34.36	26.52	0.4917	1	0	0	0	10	70	12,600	0.136436
싱가포르	1	40.12	32.27	0.0146	1	0	0	0	8.57	78	19,850	0.460806
태국	1	45.48	37.64	0.3140	1	0	0	0	6.25	64	2,110	0.239863
영국	1	25.98	31.95	0.1844	1	0	0	0	8.57	78	18,060	0.054862
미국	1	35.31	27.46	0.0721	1	0	0	0	10	71	24,740	0.929504
벨기에	0	27.01	24.27	-0.1022	0	1	0	0	10	61	21,650	0.098790
브라질	1	56.21	48.37	0.0281	0	1	0	0	6.32	54	2,930	0.144666
콜롬비아	1	52.65	44.81	-0.0463	0	1	0	0	2.08	50	1,400	0.015735
이집트	1	40.00	41.88	-0.2449	0	1	0	0	4.17	24	660	0.036679
프랑스	1	43.11	35.27	-0.5771	0	1	0	0	8.98	69	22,490	0.179923
그리스	0	34.53	36.41	0.0057	0	1	0	0	6.18	55	7,390	0.066791
이태리	1	34.93	32.2	-0.3724	0	1	0	0	8.33	62	19,840	0.084749
멕시코	1	54.8	46.96	0.0207	0	1	0	0	5.35	60	3,610	0.130612
네덜란드	0	28.59	25.86	0.1097	0	1	0	0	10	64	20,950	0.865189
필리핀	1	48.53	40.69	-0.0617	0	1	0	0	2.73	65	850	0.307956
포르투갈	1	38.05	35.31	-0.2096	0	1	0	0	8.68	36	9,130	0.066725
스페인	1	28.84	30.73	-0.6456	0	1	0	0	7.80	64	13,590	0.431484
터키	1	50.36	42.52	-0.5980	0	1	0	0	5.18	51	2,970	0.210938
독일	0	31.37	23.53	0.0811	0	0	1	0	9.23	62	23,560	0.326681
일본	1	34.82	26.98	-0.0232	0	0	1	0	8.98	65	31,490	0.272191
한국	1	34.52	26.68	0.1295	0	0	1	0	5.35	62	7,660	0.365925
대만	1	29.48	35.45	-0.0664	0	0	1	0	8.52	65	10,425	1.723310
덴마크	1	32.45	24.61	0.2063	0	0	0	1	10	62	26,730	0.198953
핀란드	1	30.04	27.31	-0.3762	0	0	0	1	10	77	19,300	0.180872
노르웨이	1	34.21	31.48	-0.2218	0	0	0	1	10	74	25,970	0.227386
스웨덴	1	31.63	28.90	0.0113	0	0	0	1	10	83	24,740	0.547067

자료: *European Tax Handbook 2001*, IBFD.*Individual Taxes 2001-2002*, PWC.

III. 국가군별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과 배경 89

<표 III-9> 자본이득과세국 Probit 분석 결과

설명변수	모델 I		모델 II	
	추정치	chi-square	추정치	chi-square
상수	7.52811* (5.18098)	2.1113	6.70439* (3.60257)	3.4633
평균지니계수	-9.16431* (6.41024)	2.0439	-6.33795 (5.12017)	1.5322
법치(Rule of Law)	-0.62918* (0.40617)	2.3995	-0.41791* (0.29226)	2.0477
회계기준	-0.05260 (0.04296)	1.4990	-0.05713* (0.03360)	2.8913
일인당 GNP	0.0001539* (0.00009848)	2.4426	0.00008782 (0.00006923)	1.6090
주식거래량/GDP	1.57491* (1.04219)	2.2875	0.92561 (0.75598)	1.4991
더미변수				
프랑스식 법제	0.96554 (0.93316)	1.0706		
독일식 법제	-0.70485 (1.10010)	0.4105		
북구식 법제	-6.05720 (36120.2)	0.0000		
우도함수의 최대값	-10.98282755		-13.11205529	
LR 통계량	21.9657		26.2241	

주: 1) ( )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 표시는 Chi-Square검정통계량 값이 유의적임을 표시함.

## IV. 결론 · 정책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 1. 개인소득세, 부유세,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관계

자본이득과세는 그 자체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조세체계 내에서 다른 조세들, 특히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및 부유세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자본이득세의 국가별 도입 여부 및 그 구조는 각국에서의 과세근거 및 조세정책적 목적에 크게 의존하는데, 특히 소득세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간의 관계를 보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란 ‘소비에 부의 변화를 합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가치 증가는 명백히 소득이므로, 모든 자본이득은 차별대우 없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헤이그-사이먼스의 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소득과세이다.

그러나 공개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주식같이 유동성이 높은 증권은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 부동산, 그리고 서화·골동품과 같은 자본자산들의 경우,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기는커녕 소유주가 그 시장가치를 알 수도 없는 것이 많다.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납세자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를 해서 가치증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과세당국은 이들 신고서들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게 하는 것은 조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이 매우 높은 일이다. 따라서, 납세자로 하여금 매년 그들의 자본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하느니, 해당자산이 매각되

는 등 자본이득이 실현되었을 때만 과세하는 실현주의과세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의 문제와 더불어,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발생주의로 과세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은 납부세액 확보(liquidity)의 문제로서,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실현시기까지 납세를 연기시켜 주게 된다.

둘째, 자본이득도 다른 통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소득세(PIT) 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것과 별도의 분류과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세구조의 선택에는 기본적으로 조세당국이 통상소득 대비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차등과세 여부가 통상소득과의 합산을 통한 개인소득세로의 종합과세나 별도의 분리과세냐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통상적으로 누진세율체계인 개인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산입비율(inclusion rate)을 조정하거나 개인소득세율체계 중 하나의 대체세율(alternate rate)을 적용하여 경과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누진적인 세율체계로 중과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로 합산과세하는 나라들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단기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지정하거나 산입비율을 조정하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국의 자본이득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성격 및 발생시기 측면에서 차별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통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려는 추세에 있다. 다만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차별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아비트리지 기회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개인소득세 중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구권 국가의 이원적 소득세 및 네덜란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현주의과세방식에 기초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갖는 문제점과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의 한계를 純富裕稅를 통

해 해결하려 할 경우의 자본이득세의 위상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와 재산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또는 근거로, ①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한계 보완 ② 납세능력에 따른 응능 과세(ability-to-pay)원칙 ③ 부의 집중문제에 대한 직접적 완화 ④ 정부제공 공공재 등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 등이 거론된다<sup>34)</sup>. 이 중 실현주의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할 경우 미실현 발생자본이득(accrued 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 자체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순부유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 순부유세와 자본이득세 모두 人稅(personal tax)이면서 특정 개별자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순부유세는 과세대상 자산들의 미실현이득이 매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가치증가분(capital appreciation)이 계속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자본이득세는 양도 등으로 실현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연기되다가 사망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누락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매년 일정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평가한 부의 저량(wealth stock)에 대해 정기적·반복적으로 저율과세하는 순부유세적 접근방법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 불특정 기간중에 누적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실현시점이 속한 연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 접근방법의 일종의 근사치(approximation)일 수 있다. 즉, 실현주의과세원칙에 따른 동결효과문제를 완화하는 일종의 추계과세라는 발상이다. 즉, 순부(총자산-총부채)를 구성하는 자산들에 대해 매년도 과세평가를 한 후 부유세를 부과하면, 자산처분을 통해 이득을 실현하기 전이라도 보유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이득을 과세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부는 이전기간들의 모든 자본이득 및 손실들의 합이 포함된 것이라는 생각이나, 연간 부유세

---

34) 부와 재산에 대한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Rosen(2000) p. 459

의 세수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완전과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수와 근접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산디플레이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자본이득만으로는 그 근사적인 과세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자본소득까지도 대체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에 있어서 자본이득세와 순부유세 과세국가들에 있어서 양자간 관계를 살펴보면, 자본이득세 과세국가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부유세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제Ⅲ장의 실증분석에 포함된 31개국들 중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글로벌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확산 이후이며 부유세를 새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순부유세 부과 없이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들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없이 순부유세만 부과하던 나라들이 자본이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하거나 면세대상 범위를 제한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북극권 중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이러한 경우인데 유럽내 자본주변국가들로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자본소득 유형 내에 자본이득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들어 부유세를 폐지하게 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는 대표적으로 개인용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유세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평가문제 등으로 폐지한 나라들인데, 이들 국가군들의 경우 독일식 민법전통에서 개인용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sup>35)</sup>.

35) 독일의 경우 2002년 세수감소 및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단기 보유 자산에 국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전통을 깨고 단일비례세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시 과세되는 자본이전세(transfer tax)이며, 자본이득세는 재산의 유상거래시 실현이득에 과세되는 조세이다. 특히 사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의 취득가(original basis, acquisition cost)는 사망일 또는 대체평가일을 기준으로 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로 평가되어 승계되는(steppe-up basis) 세법규정은, 피상속인 생전의 발생자본이득을 모두 비과세해 버리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자본이득세의 역할 중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의제규정 중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들은 자본이득과세의 정상화를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본이득에 관한 정보는 자산의 소유상황 및 평가액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서 과세당국이 다른 자본과세 세무행정에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는 카터보고서(1966), 앳킨슨(1974), 그리고 미드보고서(1978)가 제시하였듯이 포괄적 소득세의 필요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 2.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의 자본이득과세

글로벌자본주의 확대 추세와 세무행정적 장애요인으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경과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세제의 실현주의과세방식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추계과세(presumptive taxation)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대폭적인 2001년 소득세제 개편, 그리고 미국에서의 시가주의(M2M)원칙의 적용 확대가 그 예이다. 결국 자본이득과세의 신규 도입이나 개편은 기존의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조세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세목에 대한 조정까지도 포함하는 조세개혁(tax reform)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추세는 H-S적 포괄주의 소득과세에 근접한 나라일수록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PIT)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사업·자본 등 소득유형과 원천을 구분하여 개인소득세 구조를 설계하는 유럽의 북구 쪽 자본주변국가에서도 자본이득을 자본소득과 차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인 양도소득세는 국제적인 자본이득세 기준에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치우친 편협한 과세대상에 대해, 둘째 추계과세제도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셋째 경기조절 목적으로 자산별 차등과세의 정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物稅的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상승 조정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 차등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여 동결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II장 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여 세부담을 낮게 하는 효과가 납세연기에 따른 이득에 추가하여 동결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향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종합소득세체계 개편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속·증여세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소득세와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자본소득은 포함하면서 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 누진적 개인소득과세는 양자에 대한 차등과세효과 때문에 조세회피 및 조세아비트라지 행태를 유발하여 세무행정당국이 큰 애로를 겪었다는 점이다. 제II장 5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행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및 세율체계는 구조적 측면에서 종합소득세와의 유

기적 연계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현행 종합소득세제도가 미국식 포괄주의 소득과세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협한 과세대상의 현행 양도소득을 단순히 타원천소득과 합산과세하여 누진과세하는 방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분류과세하는 접근방법하에서도 종합소득세의 구조 특히 세율체계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이 자산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처리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자산시장의 수익률에 과세 전·후 간 격차(wedge)를 발생시키는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대외 개방도가 제고될수록 자본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우대되는 자산의 자본이득으로 전환하는 조세회피 활동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인 자본이득세로 재편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체계와 구조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기준시가 적용원칙이 갖는 실질과세원칙의 위배성 문제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하게 만드는 관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시행 경험 및 운영 현황의 국제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 발전방향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운영되어 온 지 2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신고자료를 통해 납세자별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에 대한 자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리과세체계의 형평성 분석이 불가능하다. 즉, 종합소득세 고소득자에게 양도소득이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

#### IV. 결론 · 정책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97

한 기초연구 없이, 양도소득세를 특정 유형자산의 자본이득 중심의 편협한 과세대상으로 국한하면서 분리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人稅(personal tax)로서의 정상적인 자본이득과세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어야만, 현행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체계의 적정성 분석, 현행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연간일정액 소득공제나 과세양도의 산입비율 조정 등의 개편, 그리고 향후 종합소득세체계로의 흡수 전환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태원,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정책연구자료, 1993
- \_\_\_\_\_, 「증권양도차익 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강경제논집』, 제29집2호, 2000. 10
-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89.
- 노영훈,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6. 12
- \_\_\_\_\_, 「양도소득세의 정책과제」, 정책분석 98-05,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 8
- 원윤희, 『한국조세정책 50년( I )』,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이진순, 『한국의 토지세제(노영훈 편)』 「제2장 자본이득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6-12, 1996, pp. 31~65
- 전영준·한도숙·이철인, 「포괄적 소득과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최명근·김완석,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세법연구소, 2001. 2
- Agell, Englund, Sodersten, “Tax Reform of the Century-The Swedish Experiment,” *Tax Policy in the Real World*, pp. 331~352.

- Ault, “Inclusions in the Tax Base,”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 Structural Analysis*, 1997, pp. 189~201.
- Beck, Thorsten, Demirguc-Kunt, Asli; Levine, Ross, “Law, Politics, and Financ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001.
- Bird, Cynthia E., “Treatment of Capital Gain on Sale of Land to a Related Development Corporation,” *The Journal of Real Estate Taxation*, Vol.22, No.3, 1995, pp. 255~269.
- Bradford, David F., *Taxation, Wealth, and Saving*, The MIT Press, Cambridge, MA, 2000.
- Cnossen Sijbren and Messere Ken, “Personal Income Tax Reforms in OECD Member Countries,” in Sijbren Cnossen and Richard M. Bird (eds.), *The Personal Income Tax: Phoenix from the Ashes?*, North-Holland, 1990.
- Cunningham & Schenk, The Case for a Capital Gains Preference, 48 Tax L. Rev. 319, 1993.
- Glaeser, Edward L. and Andrei Shleifer, “Legal Origins,” *Harvard Law and Economics WP*, Oct. 19, 2000.
- Graetz, Michael J. & Deborah H. Schenk, *Federal Income Taxation: P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 James, Simon and Christopher Nobes, *The Economics of Taxation*, 4th ed., Prentice Hall, 1992.
- Katz Commission, “Reform of the South African Income Tax System,” *Capital Gains*, Chap. 6
- La Porta, Rafael; Lopez-de-Silanes, Florencio; Shleifer, Andrei; and Vishny, Robert W.,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6), 1998, pp. 1113~

1155.

- Mahoney, Paul, "The Common Law and Economic Growth: Hayek Might be Righ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2000.
- Merryman, John Henry, *The Civil Law Tra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s of We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 Meussen, "Netherlands – Income Tax Act 2001," 40 *European Taxation* 490, 2000.
- Mintz, Jack M., "The Role of Wealth Taxation in the Overall Tax System," *Canadian Public Policy-Analyse de Politiques*, XVII:3, 1991, pp. 248~263.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
- \_\_\_\_\_, *Taxation and Household Saving: County Surveys*, 1994.
- \_\_\_\_\_,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1988.
-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3.
- Rosen, Harvey S., *Public Finance*, 4th ed. Irwin, 1995.
- Simon Benninga, Joram Mayshar, Eli Talmore, "The Heterogeneous Taxation of Capital Income," *Public Finance* Vol.50(1), 1995.
- Slemrod, Joel and Jon Bakija, *Taxing Ourselves: A Citizen's Guide to the Great Debate over Tax Reform*, 2nd ed., The MIT Press, Cambridge, MA., 2000.

- Sorenson, Peter Birch(ed.), *Tax Policy in the Nordic Countries*, Macmillan Press Ltd., 1998.
- Tanzi, Vito and John King, "The Taxation of Financial Assets: A Survey of Issues and Country Experience," IMF Working Paper 95/46, 1995.
- Thuroni, Victor, *Tax Law Design and Draft*, Vol. I, II. IMF, 1998.
- Zodrow, G. R., "Economic Analysis of Capital Gains Taxation : Realization, Revenues, Efficiency and Equity," *Tax Law Review*, Vol. 48, No. 3, pp. 419~527.

## 부록: 각국의 자본이득세제

### 1. 미국

- 자산처분이득은 전통적으로 사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반에 포함되었음.
  - 그러나 개인(1922년부터)과 법인(1942년부터)에 대해 특정 이득들은 항상 특혜적인 과세대우를 부여해 왔음.
    - 일반적으로 우대 경감을 받는 자본이득은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재산(capital asset)의 판매 또는 교환에 따라 실현된 자본이익임.
  - 자본이득이 없을 경우 개인납세자에 한해 통상소득에 대한 자본손실공제가 일부 허용되지만, 자본이득의 범위 내에서의 자본손실공제는 항상 가능하고 미사용 자본손실은 이월할 수 있음.
  - 현재 자본이득은 일정한 경우 개인납세자에게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법인의 자본이득은 완전히 과세됨.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우대와 이러한 우대를 받을 요건에 대한 규정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근거를 정당화하기 불가능한 상황임.
- 소득세체계 내에서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있음.
  - 단기자본이득은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로 과세함.
  - 장기이득도 원칙적으로는 단기이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포

함시켜 과세하지만 장기자본자산의 처분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

- 장기(1년 이상) 보유한 예술품, 골동품 등의 소장품은 28%, 장기 비소장품의 경우 15%, 소득세율 적용자는 10%, 그 외 소득세율 적용자는 20%(2002년 이후부터는 5년 이상 보유시 8%, 18%로 인하됨)임.
  - 개인용도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손실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장·단기 모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
- 순자본손실은 3,000달러 범위 내에서 통상소득과 상쇄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순자본손실은 완전히 상쇄될 때까지 무기한 차기이월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순자본손실은 3년 전기이월 5년 차기 이월할 수 있음.
- 자본이익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음.
-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재고 등은 자본재산의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동산 및 상각자산들을 모두 처분한 결과 한 과세기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자본이익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다른 통상소득에 대해 이러한 순손실을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상각자산에 대해 발생한 이익은 취득비용을 감소시켰던 감가상각공제로 인한 것이므로 이익의 전부 또는 그 일부분을 통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임.
  - 저작권과 기타 문학적·예술적 재산은 그 자산을 창조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한 자본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음.

- 반면 특허권은 재고자산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자본재산으로서의 자격이 있음.

- 1997년 5월 7일 이후 주거주주택의 매매이익은 25만달러까지 비과세임.
  - 부부합산신고시 양도전 5년 기간중 2년을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양도전 5년 기간중 2년간 부부 공동거주한 경우 50만달러까지 비과세함.
- 1942년 이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장기양도차익과 단기양도차익이 구분되어 과세되기 시작하였으며 장단기 구분은 1976년까지 6개월이었으나 그 뒤 9개월, 12개월로 변경되었음.
  - 1986년 세계개혁시 주식양도차익의 장단기 구분을 없애고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과세방식으로 변경되어 다른 자본이득과 구분없이 적용됨.
  - 단, 동일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각 또는 취득한 경우 발생한 이득은 자본이득으로 처리하나 발생한 손실은 공제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를 증가시킴으로써 손실을 이연시킴.

## 2. 영국

- 자본이득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이며, 법인의 경우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내에 포함하여 과세함.
  - 1962년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라는 명칭이 처음 도입되었음.

- 처음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 과세하고 양도손실은 장·단기 구분 없이 일반소득에서 공제하였음.
  - 1965년부터 장·단기 구분을 1년으로 연장하여 단기양도소득은 정상과세하고 장기소득은 30%의 세율로 과세하였음.
  - 1971년부터 장·단기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양도소득을 30%의 단일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함.
  - 1986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음.
    - 1988년부터 모든 양도소득을 일반소득과 함께 25~40%의 2단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함.
    - 그러나 상당 규모의 양도소득공제를 허용하였고 물가연동공제, 상속시 양도소득세 채무의 소멸과 같은 우대조치를 두고 있었음.
  - 1988년 물가연동제(indexation allowance)가 폐지되기 전에는 자본이득을 1982년 이후의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자산의 세금비용에 대해 조정해 왔음.
  - 1998년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자산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베이스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테이퍼제도(taper system)을 도입하였음.
    - 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함.
    - 단기투자의 경우 계속 재투자되는 경우 투자기간을 합산하여 테이퍼제도를 적용함.
- 자본이득세의 기본 구조는 자산의 모든 처분이익에 대해 부과한 후 몇몇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감면(exemption)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감면대상의 예를 들면, 재고자산 판매이익, 특정 개인자산 처분익(자동차 및 개인거주주택), 특정 정부발행 유가증권

차익, 무공훈장 처분의 등입.

- 정부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세금을 면제하고 있음.
  - 약 9,300달러 미만으로 처분된 개인 자산의 이득과 손실은 자본이득세 대상에서 제외됨.
-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는 특혜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이 적용되기도 하였음.
- 개인은 연간 약 9,300달러의 감면(exemption)을 받는 것이 있지만, 개인과 법인 간에 어느 쪽을 특별히 우대하는 과세 대우는 없음.
  - 자본손실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으나, 비상장 기업(unlisted trading companies) 주식으로부터의 손실은 전액 공제할 수 있음.
-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 또는 자본이득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음.
- 유일한 주택 및 주거주주택이며 비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 또는 1982. 3. 31 중 최근일부터 매각일) 중 거주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공제함.
- 매각 직전 36개월은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대상기간에 포함함.

### 3. 일본

- 소득세 체계 내에서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있음.
- 보유기간 5년을 기준으로 장·단기자본이득을 구분하고 있으며 장기이득에 대해서는 이득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 유가증권의 경우는 장·단기 구분을 하지 않음.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리과세 특례조치를 두고 있음.
  - 장기(5년 이상)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100만엔의 장기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세율은 6,000만엔 이하는 20%, 6,000만엔 초과는 25%를 적용함.
  - 2001~2003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
  - 단기(5년 이하) 보유 부동산의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50만엔이고 세액은 양도차익의 40%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10% 중 큰 금액으로 함.
-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20%의 세율로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는 신고분리과세와 양도대금의 5%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원천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개인은 자본이득에서 공제가능하나 이월은 불가능하고 법인은 손금산입 가능함.
  - 공사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칙적으로 면제함.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주용주택의 양도차익은 3,000만엔 공제를 허용함.
  -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경감세율 적용(6,000만엔 미만은 10%, 6,000만엔 초과는 15%)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주민세가 과세되며 토지 소유자의 구분(개인, 법인)과 소유기간에 따라 다름.
  - 1991년까지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20%(주민세 6% 별도), 25%(주민세 7.5% 별도)의 2단계 세율로 과세함.

- 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
- 1991년 토지세제 개혁으로 개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소득세가 30%, 주민세가 9%로 인상되었고(1999.4.1부터) 법인은 10%의 추가과세가 도입되었음.
- 1998년 임시조치로 1998년부터 3년간, 개인은 6,000만엔을 기준으로 20%, 25%의 초과누진세율로 경감하였고, 법인은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 4. 프랑스

- 1976년까지는 사업용 자산의 처분 양도익만 과세되었으나, 부동산·유가증권·보석·귀금속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음.
  - 개인이 실현한 자본이득은 개인소득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이 실현한 자본이득은 법인세 내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임.
  -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할 목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됨.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한 이득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재건축, 수리, 이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됨.
  - 자본이득은 EUR 915을 공제한 후 과세대상 소득에 합해짐.
  -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득은 다음의 방법

으로 계산됨.

- 취득가액은 취득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이때 취득가액에는 2년 미만 보유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리비용, 인플레이션 요소, 임대이자 등이 더해짐.
-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자본이득으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차익은 2년을 초과하는 보유연도에 대해 1년 초과시 5%씩 감면되므로 2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전액 감면됨( $(22\text{년}-2\text{년}) \times 5\% = 100\%$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에 EUR 915이 추가로 공제됨.
- 산출된 순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납세자의 일반소득에 더해져 해당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계산됨.
- 납세자는 5년에 걸쳐 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연도부터는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이 공제됨.
  - 22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시
  - 주거주 주택을 매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
  - 부동산을 처분하는 납세자의 총보유자산이 EUR 61,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세율은 다음과 같음.

과세소득(EUR)	세율(%)
~ 4,121	0
4,121 ~ 8,104	7.5
8,104 ~ 14,264	21
14,264 ~ 23,096	31
23,096 ~ 37,579	41
37,579 ~ 46,343	46.75
46,343 ~	52.75

- 법인세가 적용되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개인은 해당 지분 매각익의 연간 합계의 일정액을 초과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됨.
  -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지배주주에 의한 법인주식 매각, 상장주식·채권·유사 유가증권 매각, 비지배주주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각, 비상장채권과 유사 비상장 유통채권의 매각, 파트너 권리의 매각 등임.
  - 연간 유가증권 거래액이 EUR 7,6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자본이득 역시 과세됨.
  - 특정 상황하에서는 연간 거래액이 당해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 평균으로 결정되지만, 투자회사나 기금 채권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차익은 연간 거래량에 관계없이 과세됨.
  - 모든 경우에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은 16%로 일률과세됨.
  
- 법인의 자본이득은 통상소득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율에 의해 과세되지만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9%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됨.
  -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손실은 장기자본이득과 상계하거나 10년간 차기이월할 수 있음.
  - 합병이나 기업분할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이연할 수 있음.

## 5. 독일

- 개인의 자본이득은 투기거래에 의한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고 법인의 자본이득은 전액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됨.

- 투기거래란 취득에서 양도까지의 기간이 토지에 대해서는 2년,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소득세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개인이 사업활동이나 기타 전문적 또는 농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통상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됨.
- 2001. 12. 31.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EUR 500,00까지 과세이연(rollover relief)을 허용함.
  - 과세이연은 대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줄이는 역할을 함.
  -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대체취득자산은 주식 등의 동산과 2년 또는 4년 내에 취득하는 건물임.
-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50% 감면되고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음.
- 자본이득이 발생한 해에 대체취득을 하지 않으면, 최대 4년간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50%는 그 해의 과세소득에 포함됨.
- 개인에 의한 주식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매각인이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과세됨.
  - 2002년 1월 1일부터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낮아짐.
- 자본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고 이월되거나 환불될 수도 없음.

- 개인이 사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그러나 총자본이득이 EUR 512 이상이고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1년 이내에 매각하는 주식, 채권 등의 동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됨.
  - 일정 기간동안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반면 DM1,000 이상의 단기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임.
  - 장기의 의미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10년 이상이며 주식과 기타자산은 6개월 이상으로 사업상의 상당한 지분(1% 또는 그 이상)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과세에는 특정한 규정이 적용됨.
  
- 투자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며 투자자공제 DM 3,000과 관련 비용공제 DM 100이 허용되며 부부합산신고인 경우 이 금액은 2배가 됨.
  
- 양도소득, 투자소득과 해외로부터의 임대수입은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일반적 독일의 규정에 의해 과세됨.
  - 만일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에서 과세될 수 없다면, 과세소득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이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만 유사한 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자본이득이 과세이연됨.
  - 즉, 자본이득의 100% 만큼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킴.

- 실현된 자본이득이 대체자산의 취득 등에 즉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법인에서 주식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DM 20,000까지 공제되지만 이러한 공제액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그 차익이 DM 80,000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lt;부표 0&gt; 보유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정부공채의 경우 (2000)

국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개인소득세		기타 세 <sup>1)</sup>	개인 소득세	기타 세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sup>1)</sup>			이전 <sup>1)</sup>	
	이자 지출 공제	취득 금액 공제		연간 자산 소득 (a)	연간 자산 소득 (b)	자산 가치	실현 자산 소득	자산 취득 원가	자본 이득	생전 증여	사망시 유산· 상속
호주	Y	N	N	Y	N	NA	Y <sup>2)</sup>	NR	N	Y	N
오스트리아	Y <sup>3)</sup>	N	Y <sup>4)</sup>	N	Y <sup>5)</sup>	N	Y	NR	N	Y	Y
벨기에	N	N	Y <sup>4)</sup>	Y <sup>6)</sup>	Y <sup>6)</sup>	N	N	NR	N	Y	Y
캐나다	Y	N	N	Y	N	N	N	NR	Y <sup>7)</sup>	N	N
덴마크	Y	N	N	Y	N	N	N <sup>8)</sup>	NR	N <sup>8)</sup>	Y	Y
핀란드	Y <sup>16)</sup>	N	N	N	Y <sup>5)</sup>	Y	N	NR	Y	Y	Y
프랑스	N	N	N	Y <sup>6)</sup>	Y <sup>6)</sup>	Y	Y <sup>10)</sup>	NR	Y <sup>10)</sup>	Y	Y
독일	N	N	N	Y	N	N	N	NR	N	Y	Y
그리스	N	N	N	N	Y <sup>11)</sup>	N	N	NR	N	Y	Y
아이슬란드	N	N	N	N	Y <sup>12)</sup>	N <sup>13)</sup>	N	NR	N	Y <sup>14)</sup>	Y
아일랜드	N	N	N	Y	N	N	N	NR	N <sup>15)</sup>	Y	Y
이탈리아	N	N	N	N	Y <sup>5)</sup>	NA	N	NR	N	N	N
일본	N	N	Y <sup>4,16)</sup>	N	Y <sup>6)</sup>	N	Y	NR	N	Y	Y
룩셈부르크	Y	N	N	Y <sup>17)</sup>	N	Y	N	NR	N	N	N
네덜란드	N	N	N	Y <sup>17)</sup>	N	N	N	NR	N	Y	Y
뉴질랜드	Y	N	N	Y	N	N	Y	NR	N	Y	N
노르웨이	Y	N	N	Y <sup>18)</sup>	N	Y	Y	NR	N	Y	Y
포르투갈	N	N	N	Y <sup>6)</sup>	Y <sup>6)</sup>	N	N	NR	N	Y	Y
스페인	N	N	N	N <sup>19)</sup>	N	Y	Y	NR	Y	Y	Y
스웨덴	Y	N	N	Y	N	Y	NA	NR	Y	Y	Y
스위스	Y	N	Y <sup>4)</sup>	Y <sup>20)</sup>	N	Y	N	NR	N	Y	Y
터키	N	N	Y <sup>4)</sup>	N	N	NA	Y <sup>21)</sup>	NR	NA	Y	Y
영국	N	N	N	Y <sup>20)</sup>	N	NA	Y	NR	N	N	Y
미국	Y <sup>22)</sup>	N	N	Y	N	NA	N	NR	Y	Y	Y

주: 1)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은 1994년 기준임. 기타 세는 1994년 기준임.

2) 채권에 대한 자본이득은 별도의 자본이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목소득으로서 과세됨.

3) 이자비용은 이자로 받은 금액까지 공제가가능

4) 거래세가 적용됨.

- 5)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됨.
  - 6) 납세자가 원천징수와 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7) 평생 CAD 500,000까지 비과세임.
  - 8) 별도의 자본이득세는 없고 자본이득은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됨. 그러나 채권(bonds)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9)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unquoted bonds)은 국가 및 지방 과세당국이 평가함. 시가가 있는 증권은 시가의 70%로 평가함.
  - 10) 증권(securities)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별도의 단일세율로 과세되거나 총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음.
  - 11) 정부채권(government bonds), treasury bills,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함.
  - 12) 투자소득은 별도의 10% 단일세율로 과세함.
  - 13) 부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14)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받은 경우 소득으로서 과세함.
  - 15) 자본이득세 세율은 20%임. 그러나 정부채권은 과세면제임.
  - 16) 발행 또는 취득 당시 할인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은 원천징수세가 부과됨.
  - 17) 이자소득은 특정 금액 이하는 과세면제됨.
  - 18) 이자는 단일 세율로 자본소득으로서 과세됨.
  - 19) 투자소득은 18%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재무성 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증권(notes and securities)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 면제됨.
  - 20)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됨.
  - 21) 주식, 채권, 무형자산,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됨.
  - 22) 이자비용은 투자소득에 한해 공제됨.
- 자료: IBRD, *European Tax Handbook*.

&lt;부표 1&gt; 보유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직접주식취득의 경우 (2000)

국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개인소득세		기타 세 <sup>1)</sup>	개인 소득세	기타 세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sup>1)</sup>			이전 <sup>1)</sup>	
	이자 지출 공제	취득 금액 공제		연간 자산 소득 (a)	연간 자산 소득 (b)	자산 가치	실현 자산 소득	자산 취득 원가	자본 이득	생전 증여	사망시 유산· 상속
호주	Y	N	Y	Y	N	N	NR	NR	Y <sup>2)</sup>	Y	Y
오스트리아	Y <sup>3)</sup>	N	Y	N	Y <sup>4)</sup>	N <sup>5)</sup>	NR	NR	N	Y	Y
벨기에	N	N	Y	Y <sup>6)</sup>	Y <sup>6)</sup>	N	NR	NR	N	Y	Y
캐나다	N	N <sup>7)</sup>	Y	Y <sup>8)</sup>	N	N	NR	NR	Y	Y <sup>9)</sup>	Y <sup>9)</sup>
덴마크	Y	N	Y	Y <sup>6)</sup>	Y <sup>6)</sup>	N	NR	NR	N <sup>10)</sup>	Y	Y
핀란드	Y <sup>11)</sup>	N	Y	Y	N	Y	NR	NR	Y	Y	Y
프랑스	N	N	Y	Y <sup>12)</sup>	Y <sup>13)</sup>	Y	NR	NR	Y <sup>14)</sup>	Y	Y
독일	N	N	Y	Y <sup>15)</sup>	N	N	NR	NR	N	Y	Y
그리스	N	N	Y	N	N	N	NR	NR	Y	Y	Y
아이슬란드	N	Y <sup>16)</sup>	Y	Y <sup>17)</sup>	N	Y	NR	NR	Y <sup>18)</sup>	Y <sup>19)</sup>	Y
아일랜드	N	Y <sup>16)</sup>	Y	Y <sup>12)</sup>	N	N	NR	NR	Y	Y	Y
이탈리아	N	N	Y	Y <sup>20)</sup>	N	N	NR	NR	Y	Y	Y
일본	N	N	Y	N	Y	N	NR	NR	Y <sup>21)</sup>	Y	Y
룩셈부르크	Y	Y <sup>20)</sup>	Y	Y <sup>23)</sup>	N	Y	NR	NR	N <sup>24)</sup>	Y	Y <sup>25)</sup>
네덜란드	Y	N	Y	Y <sup>26)</sup>	N	N <sup>27)</sup>	NR	NR	N	Y	Y
뉴질랜드	Y	N	Y	Y	N	N	NR	NR	N	Y	N
노르웨이	Y	N <sup>28)</sup>	Y	Y <sup>29)</sup>	N	Y	NR	NR	Y <sup>30)</sup>	Y	Y
포르투갈	N	N	Y	Y <sup>6)</sup>	N <sup>6)</sup>	N	NR	NR	Y <sup>31)</sup>	Y	Y
스페인	N	N	Y	Y <sup>20)</sup>	N	Y	NR	NR	Y	Y	Y
스웨덴	Y	N	Y <sup>32)</sup>	N	Y <sup>33)</sup>	Y	NR	NR	Y	Y	Y
스위스	Y <sup>34)</sup>	N	Y	Y <sup>20)</sup>	N	Y	NR	NR	N	Y	Y
터키	N	N	Y	N <sup>35)</sup>	N	N	NR	NR	Y <sup>36)</sup>	Y	Y
영국	N	N	Y	Y <sup>12,37)</sup>	N	N	NR	NR	Y	N	Y
미국	Y <sup>11)</sup>	N	N	Y	N	N	NR	NR	Y	Y <sup>38)</sup>	Y <sup>38)</sup>

주: 1) 고용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에 관한 내용임, 기타 세는 1994년 기준임.

- 2) 1999. 9. 21 이전 취득자산이고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명목이득의 50% 또는 실질이득의 100% 중 과세소득을 선택할 수 있음. 1999. 9. 21 이후 취득자산이고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명목이득의 50%

가 과세소득임.

- 3) 이자비용은 발생한 소득까지 공제 가능
- 4) 25% 세율로 원천징수
- 5) 1994. 1. 1 폐지되었음.
- 6)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한 후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 7) 일부 주에서 주식저축제도(stock savings schemes)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8)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임퓨테이션 세액공제
- 9) 증여 또는 증여시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10) 별도의 자본이득세는 없지만 3년 미만 소유한 경우 소득세에서 과세함.
- 11) 이자비용은 투자소득을 한도로 공제 가능
- 12) 배당금액에 세액공제액을 가산하여 총과세소득액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함.
- 13)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사회보장부담금 부과됨.
- 14) 자본이득세는 16%의 세율로 분리과세됨(10%의 사회보장부담금이 추가됨).
- 15)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분배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됨.
- 16) 승인된 주식 투자에 대해 한도금액까지 공제 가능
- 17) 10%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 18) 소득세에서 과세
- 19)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받은 자산은 소득세에서 과세함.
- 20) 배당은 원천징수되고 개인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음.
- 21) 주식의 판매나 이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20%의 세율로 별도로 과세함(6%의 지방주민세가 가산됨).
- 22) 신규회사의 주식에 대한 청약 또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취득은 공제됨.
- 23) 배당소득 중 50%는 비과세임.
- 24) 지분율이 15%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됨.
- 25)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식은 과세 면제임.
- 26) 2001. 1. 1부터 배당을 포함한 투자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2. 31 시점으로 순자산 가치의 4%를 순이익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함(결과적으로 순자산에 1.2%로 과세하는 것임).
- 27) 2001. 1. 1 폐지.
- 28) 주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음. 개인은 연간 KNr 5,000(US\$ 730)까지 주식을 살 수 있고 투자금액의 15%를 공제할 수 있음.
- 29) 배당은 법인세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고 28%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30) 보유이득에서 생긴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31) 2001. 1. 1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순자본이득의 일부가 과세대상임. 60

개월 이상은 30%,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은 4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60%, 12개월 미만은 75%임. 12개월 이상 소유한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는 2001. 1. 1로 폐지되었음.

32) 새로운 주식인 경우에만 stamp duty가 부과되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납부함.

33) 30%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함.

34) 2001년부터 개인용자산과 관련된 이자는 동산·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CHF 50,000까지 공제 가능.

35) TRL 4,900백만을 초과하는 배당은 과세됨.

36) 일반적으로 과세되지만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은 과세 면제됨.

37) PEP(Personal Equity Plan)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38) 시장가의 75%를 과세표준으로 함.

자료: 한국증권연구원,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IBFD, *European Tax Handbook*.

<부표 2> 보유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연금소득의 경우 (2000)

국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개인소득세		기타 세 <sup>1)</sup>	개인소득세	기타 세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sup>1)</sup>			이전 <sup>1)</sup>	
	이자출공제	취득금액공제		연간자산소득(a)	연간자산소득(b)	자산가치	실현자산소득	자산취득원가	자본이득	생전증여	사망시 유산 상속
호주	N	N <sup>2)</sup>	N	N	Y <sup>3)</sup>	N	Y <sup>3)</sup>	N <sup>4)</sup>	NR	NR	N <sup>5)</sup>
오스트리아	N	Y <sup>6)</sup>	N	N	N	N	Y <sup>7)</sup>	Y <sup>7)</sup>	NR	NR	Y
벨기에	N	Y <sup>6)</sup>	N	N	N	N	Y <sup>9)</sup>	Y <sup>9)</sup>	NR	NR	NA
캐나다	N	Y	N	N	N	N	Y <sup>10)</sup>	Y <sup>10)</sup>	NR	NR	NA
덴마크	Y	Y <sup>11)</sup>	N	N	Y <sup>12)</sup>	N	Y <sup>13)</sup>	Y <sup>13)</sup>	NR	NR	Y
핀란드	Y	Y <sup>14)</sup>	N	N	N	N	Y <sup>15)</sup>	Y <sup>15)</sup>	NR	NR	NA
프랑스	N	N	N	N	N	N	Y	Y	NR	NR	NA
독일	N	Y <sup>16)</sup>	N	N	N	N	Y <sup>17)</sup>	Y <sup>17)</sup>	NR	NR	NA
그리스	NA	NA	NA	NA	NA	NA	Y	Y	NR	NR	NA
아이슬란드	N	Y	N	N	N	N	Y	Y	NR	NR	NA
아일랜드	N	Y <sup>6)</sup>	N	N <sup>18)</sup>	N	N	Y	Y	NR	NR	Y
이탈리아	NA	N	NA	NA	NA	NA	Y	Y	NR	NR	NA
일본	N	N	N	N	N	N	Y <sup>19)</sup>	N	NR	NR	Y
룩셈부르크	Y	Y <sup>6)</sup>	N	N	N	N	Y	Y	NR	NR	Y
네덜란드	Y	Y <sup>8,18)</sup>	N	N	N	N	Y <sup>20)</sup>	Y <sup>20)</sup>	NR	NR	Y
뉴질랜드	N	N	N	N	N	N	N	N	NR	NR	N
노르웨이	Y	Y <sup>21)</sup>	N	N	N	N	Y <sup>22)</sup>	Y <sup>22)</sup>	NR	NR	Y
포르투갈	N	Y <sup>23)</sup>	N	N	N	N	Y <sup>24)</sup>	Y	NR	NR	N
스페인	N	Y <sup>6)</sup>	N	N	N	N	Y	Y	NR	NR	N
스웨덴	Y	Y <sup>25)</sup>	N	N	Y <sup>26)</sup>	N	Y <sup>27)</sup>	Y <sup>27)</sup>	NR	NR	Y
스위스	Y	Y <sup>28)</sup>	N	N	N	N	Y	Y	NR	NR	Y
터키	NA	Y	NA	NA	NA	NA	N	N	NR	NR	NA
영국	N	Y <sup>6)</sup>	N	N	N	N	Y	Y	NR	NR	NA
미국	N	Y <sup>6)</sup>	N	N	N	N	Y	Y <sup>29)</sup>	NR	NR	Y

주: 1)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plans)에 관한 내용임, 기타 세는 1994년 기준임.

2) 연금 불입액의 처음 A\$1,000(US\$ 670)에 대해 10%의 리베이트 적용

3) 연금기금 수입은 15%로 과세, 일시불과 연금급여는 낮은 세율로 과세

- 4) 공제가능한 연금 불입액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됨.
- 5) 부양자에게 지급된 경우라면 과세 면제
- 6) 연금 불입액의 1/2 공제가능
- 7) 승인된 연금기금에 납부하여 발생한 연금소득의 1/4은 총소득에 더해 지고 통상세율로 과세됨. 만기 전에 상환한 경우 과거에 소득공제받은 연금불입액에 대해 30%의 tax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음.
- 8) 공제액에 제한이 있음.
- 9) 연금소득은 통상세율로 과세되지만 세액공제가 허용됨. 일시불로 받은 것은 10%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10) 인출금은 전액 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연간 연금소득 C\$1,000(US\$ 780)은 기본적인 연방세율 17%로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11) 연금기금에서 발생한 실질이자는 과세대상임.
- 12) 공제가능한 금액은 연간 DKK36,500임.
- 13) 일시불로 받는 경우 세율은 40%임.
- 14) 연금 불입액의 60까지 공제가능
- 15) 연령에 따라 과세비율이 다름.
- 16) 개인연금은 생명보험의 형태만을 취할 수 있음. 보험료는 공제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의무적인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다 소진될 수 있다.
- 17) 일시불인 경우 면제됨.
- 18) 정부가 승인한 것에 한함.
- 19) 연금소득의 경우, 순소득은 표준세율로 과세됨. 일시지급은 500,000 엔 (US\$ 4,000)을 초과하는 순소득의 50%가 표준세율로 과세됨.
- 20) 퇴직소득으로 받은 것은 일시지급, 분할지급 모두 전액 과세됨. 이는 최초 연금 불입금과 자본이득을 포함함.
- 21)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NOK40,000임.
- 22) 세법에 따른 개인연금(private pension scheme) 지급은 연금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 23) 연간 총 공제액은 ①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25% ②52세까지 1인당 백만 ESP 중 적은 금액
- 24) 투자된 자본을 제외한 일시지급은 개인소득세에서 20%로 과세
- 25) 연간 공제한도액은 SEK36,900임.
- 26) 연금기금에 대한 연간 수익에 대해 10%로 과세
- 27) 인출금은 불입금이 공제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서 과세되지만, 불입금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면제임.
- 28) 전액공제
- 2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9.5세 이전에 인출한 것은 개인소득세에 추가하여 10% 과세대상임.

자료: IBRD, *European Tax Handbook*.

<부표 3> 단계별 자산과세 현황: 자가점유주택의 경우 (2000)

국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개인소득세		기타 세 <sup>1)</sup>	개인 소득세	기타 세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sup>1)</sup>			이전 <sup>1)</sup>	
	이자 지출 공제	취득금액 공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자산 가치	실현 소득	취득 원가	자본 이득	생전 증여	사망시 유산·상속
호주	N	N	Y	N	N	Y	NR	NR	N	N	N
오스트리아	Y <sup>1)</sup>	Y	Y	N	N	Y <sup>2)</sup>	NR	NR	N <sup>3)</sup>	Y	Y
벨기에	Y <sup>4)</sup>	Y	Y	Y <sup>5)</sup>	Y <sup>6)</sup>	N <sup>7)</sup>	NR	NR	N	Y	Y <sup>8)</sup>
캐나다	N <sup>9)</sup>	N <sup>9)</sup>	N <sup>9-1)</sup>	N	N	Y <sup>10)</sup>	NR	NR	N <sup>11)</sup>	N	N
덴마크	Y <sup>12)</sup>	N	Y	N	Y <sup>12-1)</sup>	Y <sup>10)</sup>	NR	NR	N <sup>13)</sup>	Y <sup>14)</sup>	Y <sup>15)</sup>
핀란드	Y	N	Y	N	N	Y <sup>16)</sup>	NR	NR	N <sup>17)</sup>	Y	Y
프랑스	Y <sup>18)</sup>	N	Y	N	N	Y <sup>20)</sup>	NR	NR	N	Y	Y
독일	N	Y <sup>21)</sup>	Y	N	N	Y <sup>22)</sup>	NR	NR	N <sup>23)</sup>	Y	Y
그리스	Y <sup>24)</sup>	N	Y	Y	N	Y <sup>25)</sup>	NR	NR	N <sup>26)</sup>	Y	Y
아이슬란드	Y	N	Y	N	N	Y <sup>27)</sup>	NR	NR	N <sup>28)</sup>	Y	Y
아일랜드	Y <sup>29)</sup>	N	Y	N	N	N <sup>30)</sup>	NR	NR	N	Y <sup>31)</sup>	Y <sup>31)</sup>
이탈리아	Y <sup>32)</sup>	N	Y	Y	N	Y <sup>33)</sup>	NR	NR	N	Y	Y
일본	Y	N	Y	N	N	Y	NR	NR	Y	Y	Y
룩셈부르크	Y <sup>34)</sup>	N	Y	Y <sup>35)</sup>	N	Y <sup>36)</sup>	NR	NR	N	Y	Y
네덜란드	Y	N	Y	Y <sup>37)</sup>	N	Y <sup>38)</sup>	NR	NR	N	Y	Y
뉴질랜드	N	N	N	N	N	N	NR	NR	N	Y	N
노르웨이	Y <sup>39)</sup>	N	Y	Y	N	Y <sup>40)</sup>	NR	NR	N	Y	Y
포르투갈	Y <sup>41)</sup>	Y <sup>41-1)</sup>	Y	N	N	Y <sup>42)</sup>	NR	NR	N <sup>43)</sup>	Y	Y
스페인	Y <sup>44)</sup>	Y <sup>44)</sup>	Y	Y <sup>45)</sup>	N	Y <sup>46)</sup>	NR	NR	N <sup>47)</sup>	Y	Y
스웨덴	Y <sup>48)</sup>	N	Y	N	N	Y <sup>49)</sup>	NR	NR	Y <sup>50)</sup>	Y <sup>51)</sup>	Y <sup>51)</sup>
스위스	Y	N	Y	Y	N	Y <sup>52)</sup>	NR	NR	Y <sup>53)</sup>	Y	Y
터키	N	N	Y	N	N	Y <sup>54)</sup>	NR	NR	N <sup>55)</sup>	Y	Y
영국	Y	N	Y	N	N	N <sup>56)</sup>	NR	NR	N	N	Y
미국	Y <sup>57)</sup>	N	N	N	N	Y	NR	NR	Y <sup>58)</sup>	Y	Y

주: 1) 이자지출과 생명보험료는 ATS 10,000까지 공제(head of household credit이나 single parent credit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ATS 20,000)  
 2) 1994. 1. 1부터 순부유세 폐지. 부동산의 표준가치(standard rateable value)에 대해 real estate tax 부과

- 3) 자본이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예외적으로 사업상 발생한 자본이득, 투기적 자본이득 등은 과세소득에 포함)
- 4) 담보이자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공제. 납세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에 대한 10년 이상의 담보이자는 총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 1992년에 설정한 부채에 대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 주택 신축 및 취득: BEF 2,303,000(부양자녀 없는 경우), BEF 2,418,000(부양자녀 1인), BEF 2,533,000(부양자녀 2인), BEF 2,763,000(부양자녀 3인), BEF 2,993,000(부양자녀 4인 이상)
  - 주택 개량: BEF 1,151,000(부양자녀 없는 경우), BEF 1,209,000(부양자녀 1인), BEF 1,266,000(부양자녀 2인), BEF 1,318,000(부양자녀 3인), BEF 1,497,000(부양자녀 4인 이상)
- 5) 주 거주주택에 대해 BEF 155,600을 귀속임대소득(imputed income)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부양자 1인당 12,900씩 추가
- 6)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immovable withholding tax' 부과함. 부동산의 연간임대가치와 같은 cadastral income의 일정비율로 과세하며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양함. Flemish는 cadastral income의 2.5%, Walloon과 Brussels은 1.25%이다. 주 거주주택에 대해 부과된 것은 개인소득세에서 최고 cadastral income의 12.5%까지 공제(credit)될 수 있다.
- 7) 순부유세, real estate tax 없음.
- 8) 전세계 순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
- 9) 개인용도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주택 취득을 위해 발생한 부채도 공제되지 않음.
- 9-1) province에서 이전세(transfer tax) 부과
- 10) 순부유세는 없고 real estate tax 있음
- 11) 주 거주주택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과세 면제
- 12) 담보이자는 자본이득에서 공제
- 12-1) 2000년부터 자가점유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방재산세(municipal and county property tax)로 대체되었음.
- 13) 자가점유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과세 면제
- 14)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과세 면제.
- 15) 배우자에 대한 이전은 estate duty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모두 면제.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에 대한 이전은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고 estate duty만 과세
- 16) 전세계 자산(property)에 대해 순부유세 부과. 핀란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immovable property)에 대해서 real estate tax 부과.
- 17)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거주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득은 과세 면제됨(최소한 2년간 납세자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었어야 함). 연간 FIM 3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본이득이 과세 면제
- 18) 담보이자에 대한 credit은 폐지되었지만 주 거주지의 취득 및 개량을 위해 1998. 1. 1. 이전에 계약한 것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됨. credit 금액은 이자지급액의 25%로 연간 FRF 15,000가

지입(부양자녀 1인당 FRF 2,000추가). 주택의 취득 및 개량을 위해 1997. 1.1이전에 계약한 대부의 경우 credit 금액은 이자지급액의 25%로 연간 FRF 20,000까지(부부합산인 경우 두배)임.

2000.1.1부터 주 거주주택의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credit 은 비용의 5%임. credit 금액 한도는 연간 FRF 10,000이며 부양자녀 1인당 FRF1,000(첫 번째), FRF 1,500(두 번째), FRF 2,000(세 번째 이상)씩 증가

- 20) 순자산(과세연도 1.1의 공정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에 FRF 470,000을 초과하는 경우 순부유세 부과.  
 소유자가 점유하는 자산에 대해 property tax와 dwelling tax 모두 과세. property tax는 1월 1일 소유하는 모든 자산(property)에 부과하는 지방세임. dwelling tax는 1월 1일 주택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임.
- 21) 자가점유주택에 대한 조세감면(tax relief)이 1996. 1. 1부터 개정되었음. 조세감면대신 거주주택을 취득 또는 신축한 비용에 지급한 현금에 대해 비과세
- 22) 순부유세는 1997. 1. 1 폐지되었음. real estate tax 부과됨.
- 23) 특정 기간동안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시 발생한 이득은 비과세
- 24) 주 거주주택에 대해 지급된 담보이자는 전액 공제. 납세자 또는 그의 부양자 독신이 이미 35m<sup>2</sup>(부부인 경우 70m<sup>2</sup>, 부양자녀 1인당 20m<sup>2</sup>씩 증가)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할 수 없음.
- 25) 순부유세 없음. state real estate tax와 local real estate duty 부과됨.
- 26)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비과세
- 27) 순부유세는 과세연도말 순자산에 대해 부과. 지방(municipalities)에서 부과하는 real estate tax는 부동산의 officially assessed value에 대해 부과.
- 28) 2년이상 소유하고 특정 규모이내의 주택이라면 과세 면제. 2년 미만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킴으로써 과세이연할 수 있음.
- 29) 주 거주주택의 취득, 개량, 수선을 위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credit relief가 주어짐. 금액은 독신 IEP 2,500, 미망인과 부부는 IEP 5,000임.
- 30) 순부유세 없음. residential property tax는 1997. 4. 5에 폐지
- 31)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자산 취득에 대해 Capital acquisition tax 부과
- 32) 특정 개인지출의 19%를 한도로 credit함. 특정지출이란 의료비, 담보이자, 보험료, 교육비이며 이중 담보이자의 credit 한도는 ITL 1,330,000임.
- 33) 순부유세는 없으며 부동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municipal)에서 세금부과

- 34) 자가점유주택의 담보이자는 최고 LUF 30,000까지 공제되고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1인당 LUF 30,000이 추가됨. 취득후 5년 이후에는 최고 공제액이 100% 증가하고 그 이후 5년은 50% 증가함.
- 35) 자가점유주택의 귀속임대소득이 임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귀속임대소득은 LUF 150,000까지는 주택가치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6%임. 주택가치는 추정판매가임. 주택가치는 1941.1.1 평가를 기초로 하므로 귀속임대소득은 낮게 결정됨.
- 36) 순부유세
- 37) 처분할 권한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귀속임대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 귀속임대소득은 시장가격의 일정 비율(최고 0.8%)로 계산되며, 최고금액은 NLG 17,189(2001년)임.
- 38) real estate tax(순부유세는 2001. 1. 1 폐지)
- 39) 이자비용은 대출목적과 관계없이 공제
- 40) 국세인 순부유세, 기초자치단체의 순부유세,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세(과세기반은 부동산 시가의 20~50% 사이이며 세율은 0.2%에서 0.7% 사이임)
- 41) 발생한 비용(이자비용, 상각비용, 임대료)의 30% credit하며 한도는 PTE 101,000
- 41-1) 주거주택의 구입, 건설, 개량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25%를 credit하며 한도는 PTE 110,100
- 42) 순부유세 없음. 부동산에 대해 municipal real estate tax 부과.
- 43) 처분 후 24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의 취득, 건설 또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등에 재투자하거나 처분 전 12개월간 취득한 것의 대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과세 면제.
- 44) 주 거주주택(3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 거주지로 사용)의 취득 및 개량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ESP 1,500,000의 15%까지(최대 credit 금액은 ESP 225,000) 납세액에서 상계할 수 있음.  
취득 및 개량비용을 부채를 조달한 경우 매년 발생한 비용(원금과 이자)은 처음 2년간 ESP 750,000의 25%(3년차 이후부터는 20%), ESP 750,000 초과분의 15%를 credit 함.
- 45) 주 거주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cadastral value의 2%에 해당하는 연간 귀속임대소득이 발생.
- 46) 17개의 자치지역(autonomous regions)에서 순부유세 부과. municipality에서 real estate tax 부과. 과세기반은 cadastral value 이고 이는 8년마다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조정됨.
- 47) 65세 이상인자가 주 거주주택에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 면제
- 48)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함.
- 49) 국세로서 순부유세와 부동산세 있음.
- 50) 모든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relief provision)을 적용함. 판매전 1년이상 주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였거나 판매전 5년 중 3년 이상 주 거주주택으로 사용한 주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실현된 자본이득이 SEK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연할 수 있음. 판매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연자격이 주어짐. 이연된 자본이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의 원가에서 차감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팔릴 때 이연된 이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됨.

- 51) 주단위에서 부과
- 52) 순부유세 있음.
- 53)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항상 과세대상이며 소득세와 별도로 자본이득세(cantonal real estate gains tax)를 주에서 부과함.
- 54) net estate tax 없음. municipality에서 real estate tax부과.
- 55) 4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 면제.
- 56) 순부유세 없음. 사업용 부동산은 real estate tax 부과.
- 57) 한도는 대출금 \$1,000,000
- 58) 자가점유주택의 판매 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자본이득 중 \$250,000를 공제함.

## 부록 I: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

국내세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풍부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조세법, 비교세무행정학 등 국가별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국가간 비교하는 학문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자료가 여전히 빈약하며 영어와 같은 국제공통어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비영어권 국가를 포함한 국가들의 자본이득과세 국제비교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분석을 시도할 경우 해당국 언어로 기술된 문헌을 독해할 수 있으면서 장기간 연구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인 장벽 이외에도 세법의 복잡성 자체가 국제간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별로 다른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을 문헌을 통해 파악하기란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해 이미 상당 분량의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이용가능하고, 현지출장 면담 등을 통해 자료수집 및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연구자료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에 뒤이은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i) Hugh Ault et al.,의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 Structural Analysis*(Kluwer, 1997)는 소득세법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탁월한 입문서이자 개요서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를 주된 대상 국가로 삼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부제가 시사하고 있듯이, 해당국가들의 소득세제를 그 기본구조적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ii) Victor Thuronyi 가 편집한 *Tax Law Design and Drafting* 은 소득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조세법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된 초점은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transition countries)의 세법을 설계하고 법률안을 작성할 때에 참고할 기준원칙(baseline principle)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국가들간 상이한 제도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부분에 비교세법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국가별 자료를 IMF 회원국의 국제 항목 세법 목록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iii) *Tax Laws of the World*는 영어로 기술된 가장 포괄적인 세법 모음집인데, 가장 최신 자료로 항상 수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원어로부터 영어로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iv)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은 매년 2권의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을 발간하고 있는데, 비교세법학에서의 특정 주제 특히 국제조세 분야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 보고서가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여 총론적인 일반보고서가 있다. 매권마다 과거의 주제목록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정국가의 특정주제에 대한 연구를 조사할 때 도움이 된다.

v) *Tax Notes International*은 국제조세법 및 특정국가의 최근 세제변화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정보지이다. 과거 발행본을 CD로 발행하여 관심있는 시기의 관련 국가 세제 변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색인 또는 Lexis, Westlaw, Taxbase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최근 동향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모든 주제가 균형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많은 유용한 정보가 있

으며 특히 조사자의 관심 주제에 대한 기존연구물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OECD비회원국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vi) 한편, 정기적 학술지로서 비교조세론에 대한 논문을 실고 있는 저널로는,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Tax Planning International Review*,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EC Tax Review*,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Forum* 등이 있다.

vii) The International Bureau for Fiscal Documentation은 비교조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출판사로서, 출간물들의 내용은 分析的이기보다는 記述的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남미 및 동아시아지역의 세법에 대해서도 발간물이 있다. 웹사이트인 [www.ibfd.nl](http://www.ibfd.nl) 을 통해 발간도서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iii) Kluwer Law International 은 국제조세 및 비교세법 분야에서 다수의 훌륭한 연구물들을 출판하고 있다. 웹사이트인 [www.kluwerlaw.com](http://www.kluwerlaw.com) 을 통해 출판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ix) The Harvard World Tax Series는 많은 나라들의 조세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어로 쓰여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오래 전에 쓰여진 자료라는 한계 때문에 최신 정보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x)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점차 웹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되었는데, 특정국의 경우 세법전문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http://www2.unimaas.nl/~rluja/taxdata.htm>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부터의 세법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연계지(link)로 활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의 세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정국의 조세에 대해 해당 세법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및 해당국의 재무성이나 국세청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부록 II: 법전통의 역사적 발전<sup>36)</sup>

### 1. 로마 민법(Civil law)전통의 역사적 성립

6세기 경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 황제가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이라고 현재 부르는 로마(시)민법 또는 유스티니아누스법전(Justinian texts)를 편찬했다.

하이에크는<sup>37)</sup> 유스티니안 법전은 로마법의 원래 법철학과는 매우 다르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래의 로마법은 법을 개인 및 국가보다 우위에 두었었는데, 유스티니안 법전은 왕권을 법 위에 두고 있다. 둘째, 로마의 법들은 Jurisconsults의 의견을 통해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유스티니안 법전은 그 전통을 깨고 국가의 권력을 집중시켜 성문법(statute)에 의한 과도한 규제를 시도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Corpus Juris Civilis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다는 것, 그리고 로마법 원전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원래의 로마법문서들을 일부 소각해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는 그가 편찬한 내용만으로 법학자에 의한 추가적인 해석이나 주석 없이도 충분히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sup>38)</sup>” 비록 유

36) 본 부록은 Beck, Demirguc-Kunt, Levine(2001)의 “Law, Politics and Finance”에서 소개한 법체계의 역사적 변천을 정리 요약함.

37) Hayek, Friedrich,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 166~167.

38) Merryman, John Henry, *The Civil Law Tra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s of We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p.7

스티니아누스는 로마민법은 완벽하고 불변한다고 생각했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당대에 있어서도 로마민법은 계속 변화했었다.

Corpus Juris Civilis는 동로마제국의 멸망으로 몇 세기간 잊혀져 있다가 11세기 말 경 재발견되어 볼로냐와 다른 이탈리아 내 대학들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법전과 이에 대한 연구물들이 결국 유럽 보통법의 기초가 되어, 보통법(jus commune)이라고 현재 불리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12세기에서도 시민법 전통은 이론적 완벽성과 실용적 현실 간에 갈등을 빚고 있었다. 민법전통의 기본원칙은 성문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법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스티니아누스 로마법은 理性을 글로써 구현한(ratio scripta) 이상적인 법이라고 간주되어, 그 원칙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나 모든 법적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론적으로 로마법은 재해석은 가능하지만 불변의 완성된 법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럽의 법체계는 변화하는 상업관계에 직면하여 상법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상법은 고도로 변화 가능한 準私法(semi-private law)으로서 중세유럽을 통해 상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법체계들은 교회법(Canon Law) 및 관습법(Secular Law)를 포함하게 되었고, 결국 유럽의 법전통은 동태적이며, 미완성이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 2. 프랑스 민법전통

계몽시대가 프랑스혁명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국민주의(nationalism)에 대한 강조는, 입법부의 역할을 찬양하면서 사법부의 법 제정권을 축소시키는 데서 나타난다. 대혁명 전에는 법관들이 귀족계급의 일부를 구성했었고, 지주귀

족(landed aristocracy)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었다. 전제군주가 종종 혁신적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새 법을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내리거나 관료들의 법집행을 방해했었다. 프랑스혁명은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을 없애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세기 초 프랑스법전을 입안한 사람들은 거의 1,300년전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법학자들처럼 지역적인 법체계를 통일하여 완전하고도 명쾌하며 불멸의 법전을 만들겠다는 이상주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즉, 입법부는 빈 구석없이 법을 입안하여 법관은 입법조문이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입법부는 상충되는 법들을 입안하지 않음으로써 판사들이 상충되는 규정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을 만들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문은 명확해서 법관은 모호한 조문들에 대해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완전한 성문법을 제정하여 법관이 개별사례별로 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처럼 나폴레옹 역시 후대의 주석이 불필요할 정도의 명쾌하고 완전한 법전을 원했으므로, 프랑스 민법전의 첫 주해서(commentary)가 발간되었을 때, “나의 민법전은 끝났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비록 프랑스의 민법전이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이고 정태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많은 법전입안자들은 법제정 후 법관들 및 법학자들이 법전을 발전시켜나아 갈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던 노련한 사람들이었다. 프랑스의 법전통은 실제에 있어서도 2,400년간의 로마, 교회법, 상법, 그리고 관습법이 미친 동태적 영향들을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했다. 이론과 달리, 프랑스법원

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나폴레옹법전 제1382조(Article 1382)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법(tort law) 전체를 구축한 셈이 되었다. 이론과 달리, 프랑스 심판원(Tribunal of Cassation)은 특정한 법적 판결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는지를 설명해 놓기까지 한다. 실제에 있어서, 프랑스 법전통은 실제적 현실에 부딪치면서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나폴레옹법전은 국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비록 프랑스혁명이 절대군주정부를 타도했지만, 강력한 중앙정부를 유지시킨 셈이다. 나폴레옹법전으로 국가는 모든 법의 원천이 되었다. 즉, 성문법은 국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확대시켰는데, 개인재산소유자들에게 권력을 뺏아 국가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 3. 독일의 민법과 프랑스 민법과의 차이점

계몽시대의 영향뿐만 아니라 청교도혁명(Protestant Reformation)은 독일의 법철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연이 재산을 만들고, 경제적 관계가 계약이 되며, 양심이 의지 및 의사가 된다<sup>39)</sup>” 따라서 국가의 세속화가 재산 및 계약을 허용하게 되었다. 합리적 비판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계몽시대의 한 가지 중요한 산물로서 성문화에 대한 믿음, 즉, 다양한 지역적 법체계들이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며, 통일된 법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다. 성문화의 노력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나, 독일의 통일법전은 독일통일 및 한 사람의 결정적인 정치지도자를 기다려야만 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국가를 통일하였으며 법원, 민사절차, 그리고 파산법을

---

39) Berman, H. J.,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97. p. 30

통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하고, 1873년 독일의 모든 민법을 통일하여 성문화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나폴레옹법전을 특징짓는 혁명적 열정과는 달리 1896년의 독일 민법전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성격이 역사적 측면이 강하고, 과학적이며, 명백히 동태적인 특성이 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민법전의 구축을 명령할 당시에는 이미 프랑스 민법전의 약점들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독일의 법학자인 Karl von Savigny는 프랑스식 접근 방식을 배격하고, 한 나라의 법은 그 민족이 발전해 온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독일법을 제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로마민법, 옛 게르만법, 그리고 근대의 상법을 포함한 기존의 독일법들에 대한 역사적 발전 양태를 철저히 연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독일법체계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만 법학자들이 독일법 전통에 내재된 원칙과 특징들을 성문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랑스민법전과는 달리 독일민법전은 기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없고 오히려 독일법체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독일법의 원칙들을 성문화하려는 발상이었다. 나폴레옹 법전이 전체적으로 불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반면, 독일민법전(Das Bürgerliches Gesetzbuch)은 전체적인 동태성을 전제하고 만들어졌다.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 전통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네가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두 나라 모두 법을 성문화하였다. 성문법의 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완전한 법규칙들의 집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둘째, 민법전이 다양한 지역적 법률들을 통일하여 하나의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셋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관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하였지만 법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은 독일민법전 제정 때보다 나폴레옹법전

의 형성단계에서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법전통은 법관 및 법학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역할에 대해 보다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입법활동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기계적으로 부인하지만, 독일은 이러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독일법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련된 분쟁을 프랑스에서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부의 행정법원에 귀속시키는 반면, 독일에서는 사법부가 이러한 분쟁을 다룬다.

넷째, 독일의 법 전통은 프랑스법전의 정태적 이상주의를 애초부터 부인하는 명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며 그들의 역할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므로 작성된 법조문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법 전통은 프랑스 민법과 비교할 때, 보다 변형가능하며 시간에 따라 변함에 따라 동태적일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 4. 영국의 보통법 전통(Common Law Tradition)

영국의 법학자들은 영국 보통법의 원천을 1066년 헤이스팅즈에서의 노르만정복에 두고 있다. 윌리엄왕은 귀족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그의 중앙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토지를 배분하였다. 1068년의 잉글랜드내 모든 재산에 대한 Domesday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하고 세금징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윌리엄왕이 웨스트민스터에 권력을 중앙집중시키면서 중앙집권화된 왕실법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향후 수세기간 사법부의 중앙집권화와 영국법의 통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영국의 '보통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유럽대륙 내에서의 성문법 제정의 원동력 중 하나이었던 국가와 법의 통일에 대한 열망 같은 요인을 없었

다고 할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영국 보통법은 특정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고, 개인재산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잉글랜드 내에서의 토지소유권은 원래 윌리엄 1세의 봉건제도에 그 기본개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법원은 대규모 장원 소유자들에게 왕의 임차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재산권을 가진 실제 주인인 것처럼 대우하는 방식으로 법 원칙을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은 봉건제로부터 토지를 빼내는 셈이 되었다. 실제로, 17세기 초의 보통법은 사실상의 개인재산법이 되어 버렸다.

영국 보통법은 절대군주제를 추구하였던 영국의 왕과 의회간 갈등관계가 심화되었던 격동의 16세기 및 17세기에 들어 근대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왕은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봉건제적 절대특권을 재설정하려고 하였고, 독점권들을 매각하여 재정적자를 메우려 하였다. 반면 주로 토지소유자 및 부유한 상인계층으로 구성된 의회는 법원과 함께 왕에 대항하여 재산소유자편을 들고 있었다. 결국 왕은 봉건적 특권을 다시 확립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1624년 독점권을 둘러싼 알력과정에서, 최고대법관 코크(Coke)는 독점을 유지하려는 왕의 재량권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게 된다.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특권, 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떤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면, 그러한 허가는 과거에 이미 그일에 종사하였던 국민들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비록 제임스 1세는 왕의 특권은 보통법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법이 왕이라고(Lex Rex) 주장하였다. 스튜어트왕조는 1688년 몰락하였다.

프랑스의 법제사와 대조할 때, 영국보통법은 자유의 원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보통법 체계하의 국가들은 사법부를 개인권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도 말했듯이 영국법원은 봉건제를 폐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왕에 대한 토지소

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대조적으로 프랑스혁명은 사법적 귀족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법관들이 구체제(ancient regime)을 옹호하기 위해 법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진보적인 개혁은 법관이 법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했다. 프랑스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권의 우위를 추구했던 것이다. 대조적으로 영국은 독립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법부를 통해 자유를 추구하였다.

보통법국가에서는 입법이 분명히 법의 한 원천이지만, 프랑스나 독일의 민법 전통과는 달리 보통법 전통이라는 것이 법관이 광범위한 해석권한을 가지면서 법원이 법을 제정하며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Mahoney가 언급하였듯이<sup>40)</sup> 17세기 말 경 영국의 법관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추정될 때에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였다. 프랑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보통법원의 법관이 행정집행을 어떻게든 간섭하는 것은 형사적 위법행위이고, 행정부 공무원의 공식적 기능 행사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보통법국가들이 대륙식 민법체계국가들 보다 훨씬 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프랑스식 민법과 달리 영국 보통법 전통은 본질적으로 동태적 성향이 있다. 왜냐하면 보통법은 법관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보통법은 사실에 집착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결정해 나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격언이 있는 것이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영국 보통법의 전통은 유사한 사례를 유사하게 결정하기 위해 先例

---

40) Mahoney, Paul, “The Common Law and Economic Growth: Hayek Might be Righ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2000. p. 15

拘束性(stare decisis)의 원칙을 개발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법 국가들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식 민법 전통국가들과 보통법 전통국가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법학자들은 법관이 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도를 들고 있다.

<국문요약>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과제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처리문제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법 전통에 따른 세법체계의 영향,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의 자산시장 발전 정도, 부 자체 및 부의 집중에 대한 국가별 조세정책적 차이 등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자본이득을 소득세체계하에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본이득세로써 과세하는지의 과세방법은 과세 여부와 함께, 해당국의 법적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구별하여 과세취급하는 경향은 앵글로-색슨 법체계하에서, 신탁의 원본과 이자를 구분하는 법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헤이그-사이먼스적 소득 개념에 충실하게 개인소득세제를 설계한 나라들은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 및 자산시장 성숙도도 자본이득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 실물자본량의 축적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서 자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과세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개별 가계주체들의 부 및 자산 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특정 자산시장(예,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급등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게 된다.

한편, 1980년 중반 이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taxbase broadening cum rate cutt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조세개혁 움직임들은, 넓은 의미의 기존 소득세과세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자본이득을 소득의 한 원천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북구국가 및 2001년의 네덜란드는 분류과세적 소득세체계로 이전하면서 자본이득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을 개인소득세와의 구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과세, 저축 및 자산 유형별 차등과세정책, 부유세 과세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후에 이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적 구조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삼았으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으로는 현행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과세차별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Tax treatment of Capital Gains : Structural Analysis

Ro, Younghoon

The treatment of capital gains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tax policy in most of the countries.

Many factors influence the method of taxing capital gains: the legal tradition, economic development stage, capital market maturity in the country at hand, and the global trend of tax competition toward capital.

The distinction between those countries with a separate capital gains tax and those with a comprehensive taxation of capital gains within the income tax code results mainly from legal background of the tax laws. In Anglo-Saxon system, for example, the notion of nonrecurring gain generated outside of the normal stream of business income are generally available for distribution, and hence not subject to capital gains taxation. Also, countries with their individual income tax designed more closely to the Haig-Simons definition of income tend to include capital gains as income.

Countries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end to accumulate the real capital stock via domestic saving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ence pay not much attention to

capital gains issues. Also, in this fledgling stage domestic asset markets like stock exchange are not ripe enough to be integrated with the global capital market. As the individual households accumulate their wealth through various types of assets, capital appreciation in certain asset markets, like housing, come to draw attention. Early capital gains legislation was aimed particularly at speculative gains, which were felt to warrant taxation. For this fiscal equity considerations as well as the complement to income tax administration problems to capital income, net wealth tax has been introduced.

Tax reform movements since the mid-1980s toward tax base broadening cum rate cutting tends to include capital gains as a source of income. While some Nordic countries and Netherlands adopted a partially schedularized income tax system, capital gains tend to be treated in line with other types of capital income.

With the above-mentioned influences on capital gains taxation, we examine the various factors determining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in groups of countries. An empirical model whether a certain country taxes capital gains is tested under a Probit analysis. Among a total of 35 countries, the observed and quantified values of legal tradition, rule of law, accounting practices, per capita GNP, and the volume of stock traded are used as the explanatory variable dataset.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per capita GNP raises the probability of having capital gains taxed. Second, as the trading volume increases in the stock market measured by the ratio of traded stock value to GNP, the chances of capital gains to be taxed

increases.

Also, we found that the schedular taxation of capital gains apart from the individual income tax in Korea under the different progressive rate structure during period of 1996 to 2001 resulted in an inconsistent tax burden on the capital gains. When the average tax rates on the capital gains are calculated from the simulated joint distribution of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s under the comprehensive taxation and schedular taxation, some cases of capital gains taxed under the current schedular rate resulted in preferential taxation contrary to the legislature's intent.

<著者略歷>

魯 英 勳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Columbia University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政策報告書 02-12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

2002年 12月 28日 印刷  
2002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魯 英 勳  
發行人 宋 大 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7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2186-2114(代), 팩시밀리: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一 志 社  
印 刷

©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33-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